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1/2차연도)”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4-59-01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 (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59-02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59-03	농산물 수출현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59-04	FTA 체결국의 농산물 HS 코드 및 관세감축일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병훈 연구위원	어명근 선임연구위원 정대희 전문연구원 박한울 초청연구원 윤영석 위촉연구원 한보현 위촉연구조원
협력 연구 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박지현 전문연구원 이준원 연구원 신민금 연구원

R739 연구자료-1 | 2014. 12.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방안

서 진 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지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 준 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 구 원
신 민 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 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 4
   가. 주요 연구 내용 ····· 4
   나. 연구 방법 ····· 4

제2장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

1. 개황 ····· 5
2.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 ····· 7
   가. 총괄 ····· 7
   나. 아세안 시장 ····· 12
   다. 미국 시장 ····· 14
   라. EU 시장 ····· 17

제3장 미국 현지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의 FTA 특혜관세 활용실태 분석

1. 대상 수출업체의 선정 ····· 21
2. 주요 질문 내용과 조사 결과 ····· 22
   가. 주요 질문 내용 ····· 22
   나. 조사 결과 ····· 23
3. 정책적 함의 ····· 38

제4장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방안

1. 국내 생산 단계: 기본 전제 조건 ····· 41
   가. 수출국의 통관 및 검역기준에 맞는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 41

나. 정확한 라벨링 시스템 구축 ····· 42
2. 국내 유통 및 선전적 단계 ····· 43
가. 원료용 농산물 수입과 수출의 연계 시스템 구축 ····· 43
나. 영세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 증명 지원 ····· 44
3. 해외 원산지 증명 지원: 해외 수입업체 관점 ····· 45
가. 한국 수출업체와 해외 수입업체의 연결체제 구축 ····· 45
나. 맞춤형 원산지 증명 컨설팅 ····· 45
다. 정보 지원 및 Network 구축 ····· 46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 47
2. 미국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의 특혜관세 활용실태 ····· 51
3.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방안 ····· 54

<참고 문헌> ····· 57

부록

1. FTA별 농식품 수출입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 ····· 59
2. 2013년 FTA별 농식품 수출입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 ····· 78
3. 해외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 설문지 ····· 88

표 차례

제2장

표 2-1. FTA별 농식품 수출입 FTA 특혜관세 활용률 ····· 6
표 2-2. FTA별 농식품 수출입 FTA 특혜관세 활용률(2013) ····· 8
표 2-3. 농식품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2013) ····· 10
표 2-4. 한-아세안 FTA에서 농식품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2013) ····· 13
표 2-5. 한-미 FTA에서 농식품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2013) ····· 15
표 2-6. 한-EU FTA에서 농식품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2013) ····· 18

제3장

표 3-1. 설문지 문항 구성 ····· 23
표 3-2.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의 애로사항 ····· 28
표 3-3. FTA 특혜관세 활용 관련 애로사항 ····· 29
표 3-4. 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 관련 정부 요구사항 ····· 30
표 3-5. 대미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 정책 우선순위 ····· 33
표 3-6. 농수산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필요사항(현지 수입업체 관점) ··· 33

제5장

표 5-1. FTA별 농식품 수출입 FTA 특혜관세 활용률 ····· 48
표 5-2. FTA별 농식품 수출입 FTA 특혜관세 활용률(2013) ····· 49
표 5-3. 농식품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2013) ····· 50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FTA별 농식품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2013) ····· 8
그림 2-2. 농식품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2013) ····· 11
그림 2-3. 한-아세안 FTA에서 농식품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 (2013) ····· 14
그림 2-4. 한-미 FTA에서 농식품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 (2013) ····· 16
그림 2-5. 한-EU FTA에서 농식품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 (2013) ····· 19

제3장

그림 3-1. 특혜관세 적용비율 ····· 24
그림 3-2. FTA 특혜관세 절감분 사용처 ····· 27
그림 3-3. FTA 특혜관세 적용받지 못한 이유 ····· 28
그림 3-4. 한미 FTA의 기업경영 도움 여부 ····· 31
그림 3-5. 한미 FTA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 이유 ····· 31
그림 3-6. 한미 FTA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 ····· 32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013년 우리나라의 농축산 수출액 57억 2천만 달러 가운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18억 6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33%를 차지하면서 점차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중요해지고 있음.**

○ FTA 체결국으로 수출비중 증가는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FTA 활용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시사하고 있음.

○ 특히 정부가 '2017년 농산물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출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FTA를 활용한 유효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의 마련**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FTA 특혜관세 활용률[1]은 농산물 수출의 경우 수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

○ 2013년 농산물 수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63%에 이르고 있으나, 농산물 수출의 경우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약 17%에 불과함.

* 일반 제조업의 경우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70%를 상회

○ 국가/지역별 농축산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EU나 EFTA, 칠레, 미국 등이 30~40%대인 반면 나머지 지역은 0~10% 이하인 상황

- 한-칠레(28.0%), 한-EFTA(46.1%), 한-EU(43.3%), 한-미(36.7%)
- 한-싱가포르·인도 (0%), 한-아세안(3.1%), 한-페루(9.3%), 한-터키(10.2%) 등

○ 특히 ASEAN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금액은 큰 데 비해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약 3% 수준으로 매우 낮음.

- 2013년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 농식품 총수출 약 17.9억 달러 중 ASEAN으로의 수출이 9.4억 달러로 약 52%를 차지
- 그러나 대ASEAN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금액은 약 3천만 달러로 특혜관세 활용률은 3.1% 수준

□ **농축산식품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과 함께 FTA 체결국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스파게티 볼 효과, 상대국의 통관 및 무역원활화 관련 물적·인적 인프라의 낙후 등이 거론되고 있음.**

---

[1] 여기서 그리고 이하에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1년 동안 FTA 체결국으로 수출한 전체 수출액(초기 0세율인 경우를 포함, 초기 0세율을 제외하여 전체 수출액을 계산한 경우는 부록 2 참조) 대비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 수출금액의 비율임. 수출입 시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여부로 판단하였으며, 기존에 무세인 경우는 FTA 특혜관세 혜택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계산에서 제외하였음. 아울러 농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수산물인 HS 03류를 제외하고 HS 01~24류에 한정해 계산한 것임.

○ 주로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 농축산식품의 수출 시 미가공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FTA 체결국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하여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아울러 해당 국가의 원산지 확인,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관련 물적·인적 인프라 낙후도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기체결 FTA별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에 따른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계산, 제시하고, 활용률이 높은(또는 낮은) 원인을 조사하여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통해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FTA 체결국 및 품목별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계산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

○ 주요 FTA 체결국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을 수입하는 주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산 농축산식품 수입에 따른 애로사항(특히 FTA 특혜관세 활용을 중심으로)을 면담·조사하여 농축식품 수출 시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방안을 제시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 내용

□ FTA 체결국별 우리 농식품 수출입 시 FTA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

○ 기체결 FTA를 대상으로 HS 2단위에서 류별 접근

□ 해외의 한국 농식품 주요 수입업체 면담 조사

○ 한국 농식품 수입 시 FTA 특혜관세 활용실태 조사

○ 특히 미국 시장(뉴욕 및 LA)을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을 수입하는 현지 수입업체를 조사

□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방안 모색

○ 수출입업체 면접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접근

나. 연구 방법

□ 기체결 FTA 국가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원본자료를 관세무역개발원에서 입수하여 FTA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

□ 면담 조사 및 조사 결과의 통계 분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를 받아 뉴욕과 LA 현지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면담 조사

□ 아울러 관련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자문

○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업체 간담회

제 2 장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

1. 개황

□ **우리나라의 농축식품 교역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점차 커지고 있어 긍정적임.**

○ 수입의 경우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51%에서 2013년 63%로 약 12%p 증가했고, 수출의 경우도 2012년 13.9%에서 2013년 17.1%로 약 3%p 증가했음.

□ **그러나 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수출과 수입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FTA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우리나라 농축산식품 수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약 63%인 반면 수출에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약 17%로 수출입 간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46%p에 이름.

- 농식품 수입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51%에서 2013년 63%로 12%p 증가하였음. 농식품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13.9%에서 2013년 17.1%로 3.2%p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수출입 간 FTA 특혜관세 활용률 격차는 2012년 36.2%p에서 2013년 46%p로 확대되었음.

○ FTA별로 농산물 수출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수입의 경우 인도 및 터키의 FTA를 제외하고 대부분 50% 이상의 특혜관세 활용률을 기록
  * 2013년 기준 한-칠레(94.3%), 한-페루(92.8%), 한-EFTA(78.8%), 한-미(71.5%), 한-EU(64.1%), 한-아세안(57.0%)이 높은 편임.
  * 그러나 한-인도(22.6%), 한-터키(21.4%), 한-싱가포르(8.4%) FTA로 비교적 낮은 수준

표 2-1. FTA별 농식품 수출입 FTA 특혜관세 활용률

	특혜관세 활용률			
	수입		수출	
	2012	2013	2012	2013
한-칠레 FTA	88.3	94.3	25.2	27.7
한-싱가포르 FTA	6.2	8.4	0.0	0.0
한-EFTA FTA	73.2	78.8	50.6	46.1
한-아세안 FTA	58.7	57.0	3.1	3.1
한-인도 FTA	23.5	22.6	0.5	0.3
한-EU FTA	57.7	64.1	43.2	43.3
한-페루 FTA	90.8	92.8	52.7	9.3
한-미 FTA	44.5	71.5	26.1	36.7
한-터키 FTA	-	21.4	-	10.2
계	51.0	63.1	13.9	17.1

자료: 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자료를 이용해 저자 계산.

- 수출의 경우 EFTA, 미국, EU 등과의 FTA에서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싱가포르, 인도와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매우 낮음.
  * 한-EFTA(46.1%), 한-EU(43.3%), 한-미(36.7%), 한-칠레(27.7%) FTA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한-싱가포르(0.0%), 한-인도(0.3%), 한-페루(9.3%), 한-터키(10.2%), 한-아세안(3.1%) FTA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2.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

가. 총괄

ㅁ 농식품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국과 아세안 시장으로의 특혜관세 수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FTA 체결국으로의 농식품 수출 가운데 아세안과 미국의 비중이 전체의 84%에 이르는 한편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 수출비중도 아세안과 미국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FTA 체결국으로 농식품 수출은 아세안 시장이 9억 4천만 달러로서 전체의 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미국 시장으로 5억 7천만 달러에 32%를 점유하고 있음. 아울러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시장도 미국이 2억 1천만 달러로 전체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EU, 아세안의 순임.
- 따라서 대아세안 및 대미국 수출에서의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전체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의 관건이 됨.

표 2-2. FTA별 농식품 수출입 FTA 특혜관세 활용률(2013)

단위: 천 달러, %

	전체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한-칠레 FTA	5,024	0.3	1,390	0.5	27.7
한-싱가포르 FTA	104,945	5.9	0	0.0	0.0
한-EFTA FTA	6,472	0.4	2,984	1.0	46.1
한-아세안 FTA	**939,215**	52.4	**29,525**	9.6	3.1
한-인도 FTA	11,448	0.6	38	0.0	0.3
한-EU FTA	144,393	8.1	**62,532**	20.3	43.3
한-페루 FTA	845	0.0	79	0.0	9.3
한-미 FTA	**571,773**	3 1.9	**209,961**	68.3	36.7
한-터키 FTA	8,287	0.5	849	0.3	10.2
계	1,792,402	100.0	307,357	100.0	17.1

자료: 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자료를 이용해 저자 계산.

그림 2-1. FTA별 농식품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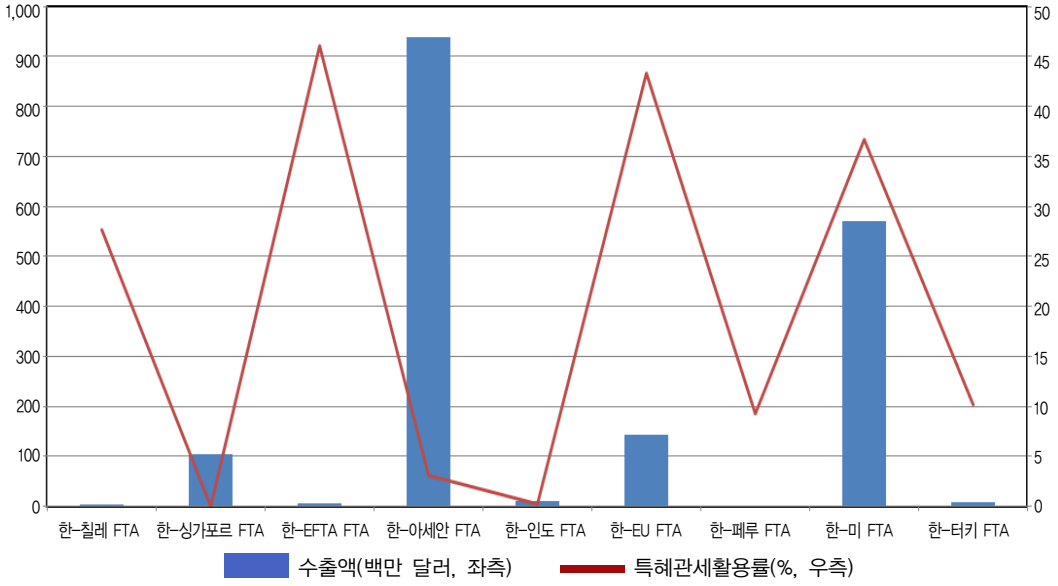

○ 이론적으로도 특혜관세 활용률(R)은 전체 FTA 특혜관세 활용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FTA(예: 한-미 FTA)에 대하여 특혜관세 활용도 변화

와 함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FTA(예: 한-아세안 FTA)에 대해서 특혜관세 활용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음.

- A, B, C 3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고, 각각으로의 수출이 X, Y, Z이고 그 중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되는 금액이 x, y, z라고 하면 전체 수출에서 특혜관세 활용률 R은 다음과 같이 표현됨.

$$R = \frac{x+y+z}{X+Y+Z}$$

- 여기서 특혜관세 활용률의 변화율($\dot{R} = \Delta R/R$)을 구하면

$$\begin{aligned}\dot{R} &= (x+\dot{y}+z) - (X+\dot{Y}+Z) \\ &= \alpha_x \dot{x} + \alpha_y \dot{y} + \alpha_z \dot{z} - (\beta_X \dot{X} + \beta_Y \dot{Y} + \beta_Z \dot{Z})\end{aligned}$$

- 단, 여기서 $\alpha_x = \frac{x}{x+y+z}$, $\alpha_y = \frac{y}{x+y+z}$, $\alpha_z = \frac{z}{x+y+z}$이고, β는 $\beta_X = \frac{X}{X+Y+Z}, \beta_Y = \frac{Y}{X+Y+Z}, \beta_Z = \frac{Z}{X+Y+Z}$을 의미하며 또한 각각의 합은 1임.
- α의 값은 미국 시장이 0.683으로 가장 높고,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의 특혜관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전체 특혜관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대미 수출에서의 특혜관세 활용도가 36.7%이기 때문에 이를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특히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은 α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혜관세 활용도가 3.1%로 매우 낮아 자체 특혜관세 활용도($\dot{x}$)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판단됨.
- 다만, 특정 시장으로의 수출이 절대적으로 증가할 경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해당 시장의 수출비중 변화율($\dot{X}$)도 같이 커지고, 이에 따라 해당 시장으로의 특혜관세 활용도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면, 전체 수출에서의 특혜관세 활용도를 낮추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결국 아세안과 미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키되 수출증가율보다도 특혜관세 활용률을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

□ 한편 유별 수출액과 특혜관세 활용도를 보면 HS 05류, 19류, 21류, 23류, 24류의 특혜관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FTA 체결국으로 수출되는 전체 농식품 수출액을 유별로 구분해 보면 19류(곡물조제품 및 베이커리제품)와 21류(조제식료품), 22류(음료 및 주류), 24류(담배류)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08류(과실류, 견과류, 감귤류)와 12류(채유종자 등)임.

○ 그런데 19류, 21류, 22류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는 비중도 높아 이를 중심으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0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 08류와 12류, 23류(식물성 박류), 24류의 경우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이 부류의 수출에서 특혜관세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전체 특혜관세 활용도를 제고시킬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음.

표 2-3. 농식품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2013)

단위: 천 달러, %

HS 세번	총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792,401	100.0	307,357	100.0	17.1
01류	1,075	0.1	0	0.0	0.0
02류	27,033	1.5	70	0.0	0.3
04류	7,406	0.4	3,051	1.0	**41.2**
05류	171,981	**9.6**	0	0.0	0.0
06류	4,305	0.2	1,851	0.6	**43.0**
07류	30,701	1.7	12,979	**4.2**	**42.3**

(계속)

HS 세번	총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08류	76,574	**4.3**	2,321	0.8	3.0
09류	11,655	0.7	218	0.1	1.9
10류	1,140	0.1	328	0.1	**28.8**
11류	36,085	2.0	3,694	1.2	10.2
12류	88,188	**4.9**	3,070	1.0	3.5
13류	35,747	2.0	3,735	1.2	10.4
14류	58	0.0	1	0.0	1.5
15류	56,064	**3.1**	6,283	2.0	11.2
16류	57,558	**3.2**	18,196	**5.9**	**31.6**
17류	62,326	**3.5**	5,294	1.7	8.5
18류	4,680	0.3	317	0.1	6.8
19류	263,545	**14.7**	83,465	**27.2**	**31.7**
20류	33,351	1.9	9,928	3.2	**29.8**
21류	362,253	**20.2**	110,536	**36.0**	**30.5**
22류	165,012	**9.2**	39,176	**12.7**	**23.7**
23류	86,619	**4.8**	342	0.1	0.4
24류	209,047	**11.7**	2,501	0.8	1.2

그림 2-2. 농식품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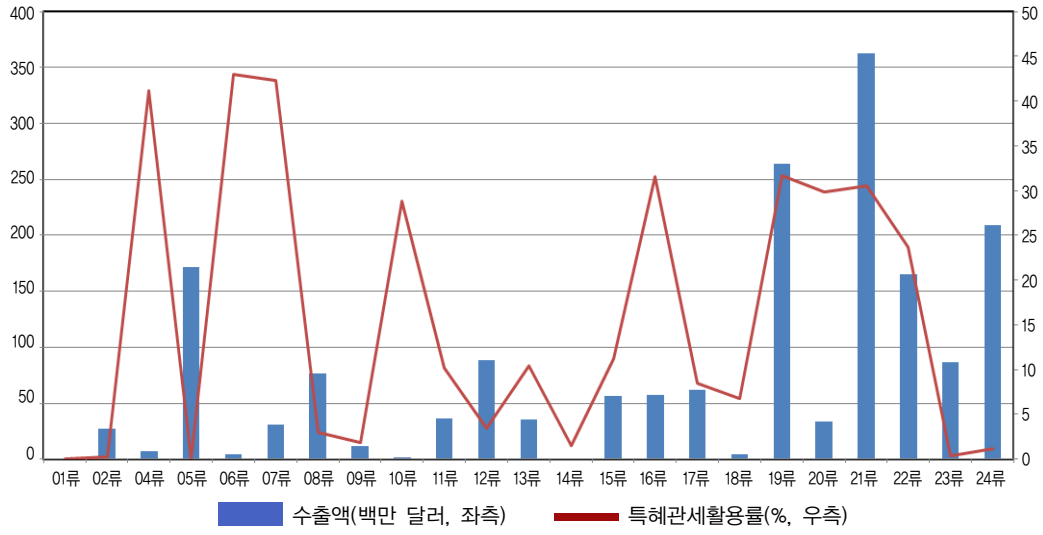

나. 아세안 시장

□ 아세안 시장으로 농식품 수출에 따른 특혜관세 활용률은 3%에 불과

○ 2013년 총 9억 4천만 달러 수출에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출은 약 3천만 달러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3.1% 수준

○ 수출이 HS 0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 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 15류(동·식물성 기름과 유지, 납), 17류(당류와 설탕과자), 19류(곡물조제품), 21~24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부류의 수출은 비중도 작으며 특혜관세 활용률도 매우 낮음.

○ 특히 HS 05류, 11류, 17류, 21~24류는 상대적으로 수출비중이 큰 데도 특혜관세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

○ 그나마 HS 15류, 21류(조제식료품)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은 편임.

□ 아세안 시장으로의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HS 05류, 15류, 19류, 21류, 22류, 24류 중심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아세안으로의 주요 수출 농식품은 담배, 커피조제품, 음료, 과당, 라면, 닭고기, 옥수수전분, 인삼, 딸기, 비스킷, 대두박, 설탕, 맥주, 잎담배, 쇼트닝, 인스턴트 면, 감, 팽이버섯, 아이스크림, 옥수수유, 조제분유, 소주, 혼합조미료, 단일과실조제품, 젤라틴, 국수, 배, 오리고기, 김치 등임.

○ 이들 대부분은 HS 0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 15류(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과 기름, 납), 19류(곡물, 밀크조제품 및 베이커리제품), 21류(조제식료품), 22류(음료), 24류(담배류) 등에 포함됨.

□ 한편 신선 농식품이어서 수출이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딸기와 배 등의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

○ 특히 HS 06~08류는 그 대부분이 신선 농산물로 현재 특혜관세 활용이 매우

표 2-4. 한-아세안 FTA에서 농식품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2013)

단위: 천 달러, %

HS 세번	총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939,215	100.0	29,525	100.0	3.1
01류	158	0.0	0	0.0	0.0
02류	26,592	2.8	0	0.0	0.0
04류	1,974	0.2	0	0.0	0.0
05류	169,406	18.0	0	0.0	0.0
06류	186	0.0	0	0.0	0.0
07류	10,122	1.1	462	1.6	4.6
08류	29,479	3.1	26	0.1	0.1
09류	3,690	0.4	0	0.0	0.0
10류	577	0.1	5	0.0	0.8
11류	26,093	2.8	0	0.0	0.0
12류	49,165	5.2	437	1.5	0.9
13류	8,890	0.9	21	0.1	0.2
14류	18	0.0	0	0.0	0.0
15류	33,594	3.6	2,818	9.5	8.4
16류	6,054	0.6	0	0.0	0.0
17류	48,547	5.2	29	0.1	0.1
18류	2,861	0.3	0	0.0	0.0
19류	87,403	9.3	3,828	13.0	4.4
20류	9,167	1.0	41	0.1	0.4
21류	169,371	18.0	21,009	71.2	12.4
22류	62,892	6.7	68	0.2	0.1
23류	82,961	8.8	0	0.0	0.0
24류	110,015	11.7	781	2.6	0.7

저조한 상태이어서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통해 수출수익률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그림 2-3. 한-아세안 FTA에서 농식품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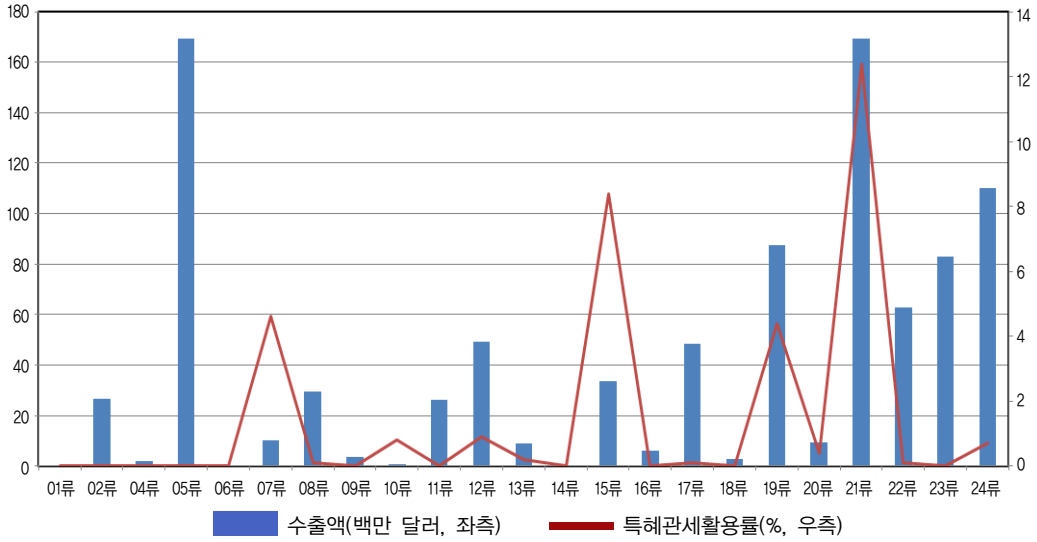

다. 미국 시장

□ 미국 시장으로 농식품 수출에 따른 특혜관세 활용률은 3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2013년 총 5억 7천만 달러 수출에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출은 약 2억 1천만 달러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36.7% 수준

○ 수출이 HS 08류(식용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12류(채유종실), 19류(곡물조제품), 21류(조제식료품), 22류(음료 및 주류), 24류(담배류)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혜관세 활용률은 부류마다 차이를 보임.

- HS 08류, 12류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2~7%로 낮은 반면, HS 19류, 21~22류는 4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

□ 미국 시장으로의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HS 07류, 08류, 16류, 19류, 21류, 22류, 24류 중심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미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농식품은 담배, 음료, 라면, 배, 비스켓, 젤라틴, 인삼, 국수, 곡류조제품, 소주, 고추장, 베이커리반죽, 빵, 커피조제품, 인스턴트면, 아이스크림, 팽이버섯, 김치, 간장, 밤, 혼합조미료, 발효유, 고추, 맥주, 된장, 냉면, 과실조제품, 유자차, 감귤 등임.

○ 이들 품목은 대개 미국으로 수출되는 HS 07류, 08류, 16류, 19류, 21류, 22류, 24류로 이들을 중심으로 특혜관세 활용도를 올리는 맞춤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HS 07, 08류의 경우는 대개가 국산 농식품으로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맞춤형 전략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표 2-5. 한-미 FTA에서 농식품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2013)

단위: 천 달러, %

HS 세번	총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571,773	100.0	209,961	100.0	36.7
01류	365	0.1	0	0.0	0.0
02류	273	0.0	70	0.0	25.7
04류	4,911	0.9	3,036	1.4	61.8
05류	864	0.2	0	0.0	0.0
06류	2,081	0.4	1,263	0.6	60.7
07류	11,217	2.0	7,311	3.5	65.2
08류	31,282	5.5	2,023	1.0	6.5
09류	4,764	0.8	209	0.1	4.4

(계속)

HS 세번	총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0류	302	0.1	210	0.1	69.5
11류	6,700	1.2	3,469	1.7	51.8
12류	25,095	4.4	507	0.2	2.0
13류	13,433	2.3	3,700	1.8	27.5
14류	10	0.0	1	0.0	8.3
15류	2,534	0.4	1,659	0.8	65.5
16류	**36,355**	**6.4**	**7,738**	**3.7**	21.3
17류	5,962	1.0	3,959	1.9	66.4
18류	1,242	0.2	174	0.1	14.0
19류	**126,359**	**22.1**	**55,400**	**26.4**	43.8
20류	16,853	2.9	7,775	3.7	46.1
21류	**149,249**	**26.1**	**79,678**	**37.9**	53.4
22류	**69,692**	**12.2**	**30,479**	**14.5**	43.7
23류	197	0.0	135	0.1	68.3
24류	**62,031**	**10.8**	1,166	0.6	1.9

그림 2-4. 한-미 FTA에서 농식품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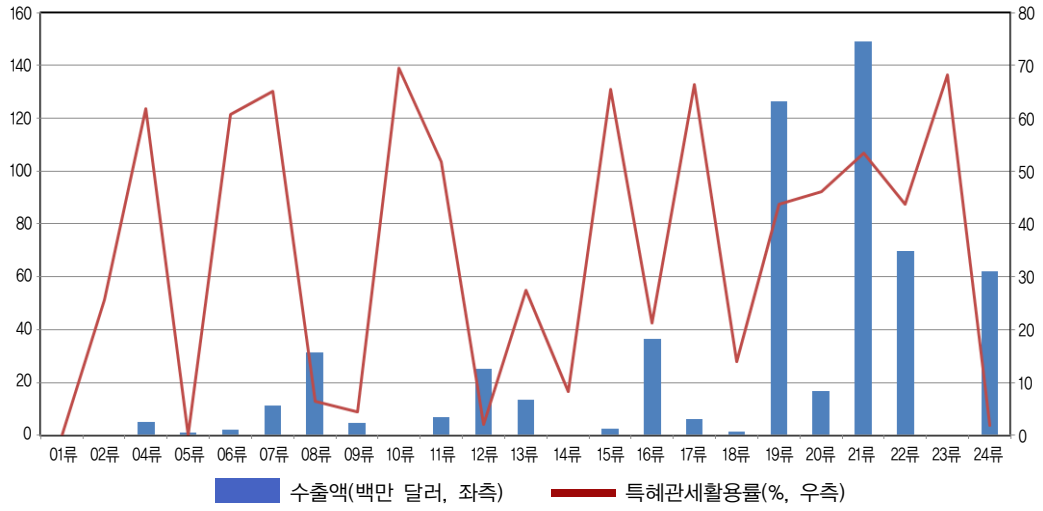

라. EU 시장

□ EU 시장으로 농식품 수출에 따른 특혜관세 활용률은 약 4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2013년 총 1억 4,400만 달러 수출에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출은 약 6,253만 달러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43.3% 수준

○ 수출이 미국과 유사하게 HS 07류(식용 채소), 13류(락, 검 등), 19류(곡물조제품), 21류(조제식료품), 22류(음료 및 주류), 24류(담배류)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혜관세 활용률은 부류마다 차이를 보임.

- HS 13류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0%이지만, HS 19류, 21~22류는 4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

□ EU 시장으로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HS 07류, 19류, 21류, 22류, 24류 중심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EU로 수출되는 주요 농식품은 라면, 음료, 젤라틴, 새송이버섯, 단일과실조제품, 균질화된 담배, 인스탄트 면, 김치, 국수, 인삼, 면, 선인장, 커피조제품, 담배, 감귤, 비스킷, 곡류조제품, 고추장, 간장, 팽이버섯, 베이커리 반죽, 녹차, 당면, 소주 등임.

○ 이들 품목은 대개 EU로 수출되는 HS 07류, 13류, 19류, 21류, 22류, 24류로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특혜관세 활용도를 올리는 맞춤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HS 07, 08류, 12류의 경우는 대개가 국산 농식품으로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맞춤형 전략도 강구할 필요

표 2-6. 한-EU FTA에서 농식품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2013)

단위: 천 달러, %

HS 세번	총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44,393	100.0	62,532	100.0	43.3
01류	548	0.4	0	0.0	0.0
02류	158	0.1	0	0.0	0.0
04류	122	0.1	15	0.0	12.6
05류	1,711	1.2	0	0.0	0.0
06류	2,009	1.4	588	0.9	29.3
07류	**7,483**	5.2	**5,162**	8.3	**69.0**
08류	1,954	1.4	271	0.4	13.9
09류	1,007	0.7	10	0.0	1.0
10류	158	0.1	113	0.2	**71.8**
11류	583	0.4	216	0.3	**37.1**
12류	4,767	3.3	1,805	2.9	**37.9**
13류	**11,301**	7.8	5	0.0	0.0
14류	30	0.0	0	0.0	0.0
15류	1,979	1.4	1,611	2.6	**81.4**
16류	**14,274**	9.9	**10,360**	16.6	**72.6**
17류	5,021	3.5	936	1.5	18.6
18류	332	0.2	142	0.2	**43.0**
19류	**33,170**	23.0	**20,835**	33.3	**62.8**
20류	5,024	3.5	2,036	3.3	**40.5**
21류	**21,606**	15.0	**9,515**	15.2	**44.0**
22류	**18,401**	12.7	**8,233**	13.2	**44.7**
23류	1,817	1.3	177	0.3	9.8
24류	10,937	7.6	501	0.8	4.6

그림 2-5. 한-EU FTA에서 농식품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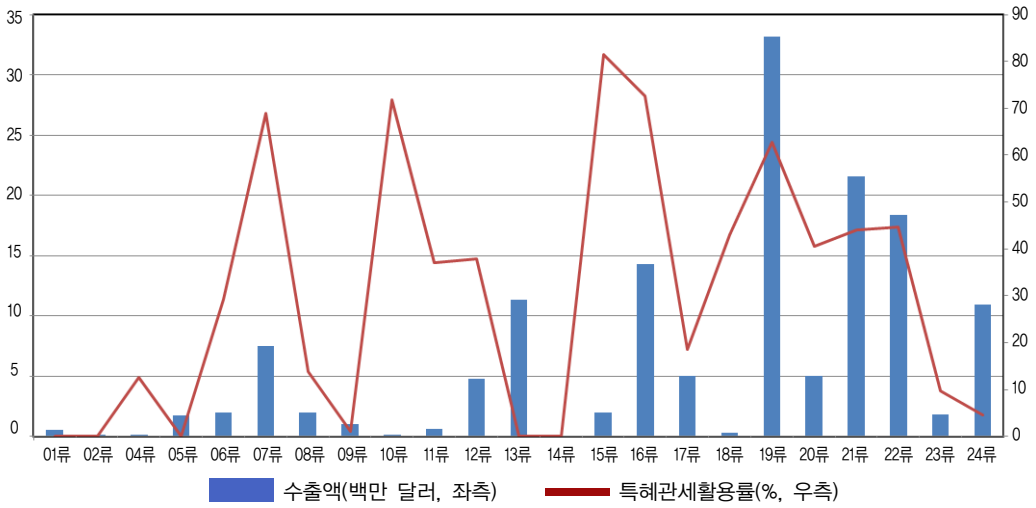

제 3 장

미국 현지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의 FTA 특혜관세 활용실태 분석

1. 대상 수출업체의 선정

□ 미국에서 뉴욕과 LA를 선정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 농식품 수출비중이 큰 미국을 선정
-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 농축산식품 수출의 최대 시장이지만 아직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제외
-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 ASEAN과의 수출비중이 가장 크지만 아세안은 10개국으로 이루어져 국가별로 수입업체를 조사하는 것은 차후 과제로 하고, 그 다음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미국을 선정

○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을 수입하는 제일 큰 시장은 LA이며, 그 다음이 뉴욕임.

□ LA와 뉴욕에서 한국산 농식품을 수입하는 주요 40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 설문 조사지를 배포

○ LA와 뉴욕에서 한국산 농식품 수입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주요 수입 및 도·소매업체 40여 개를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를 받아 LA와 뉴욕의 aT 지사를 통해 주요 업체 40여 개(LA 21개, 뉴욕 25개)를 선정, 사전 설문지 배포 후 회수

2. 주요 질문 내용과 조사 결과

가. 주요 질문 내용

□ 실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질문[2]

○ 한국산 농산물 수입 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부터 실제 수입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질의

○ 그 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업체의 입장에서 보는 정부의 지원 및 자구책에 관해서 질의

---

2 질문지는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표 3-1. 설문지 문항 구성

	설문 내용
1. FTA 활용	· 특혜관세 적용 사실 인지 여부
	· 특혜관세 적용 여부
2. FTA 특혜관세 규모	· 해당 품목, 수입액
3. FTA 수출 활용	· 특혜관세 절감분 사용처
4. 다른 나라와의 거래	· 멕시코, 캐나다로부터의 수입 여부, 규모
	· NA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
5.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	· 적용 시 어려운 점
	·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
	· FTA 특혜관세 활용 관련 애로사항
	· FTA 특혜관세 활용 관련 정부 요구사항
6. FTA 평가	· 한미 FTA의 기업경영 도움 여부, 이유
7. 정부 지원책	· 대미 수출확대를 위한 한국 정부차원의 우선 지원책
	· 현지 수입업체 입장에서 대미 수출증대를 위한 필요사항

나. 조사 결과

1) 한미 FTA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 사실 인지 여부

ㅁ 설문 참여업체 46개 중 38개 업체가 한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미국 내 세관통관에서 일반 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여 미국 현지 수입업체들이 FTA 특혜관세 적용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46개 업체중 7개 업체는 '어렴풋이 알고 있다'에, 1개 업체가 '모른다'에 답한 반면, 38개 업체가 '잘 알고 있다'고 답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이들 업체 중 현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거나 과거 적용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35**개 업체로, **9**개 업체는 **FTA** 특혜관세 적용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를 실제 수입 시 적용받은 적은 없다고 답하였음.

그림 3-1. 특혜관세 적용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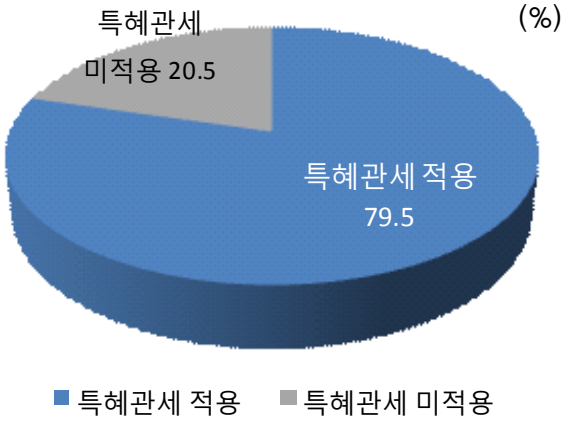

2) 한미 FTA의 특혜관세 적용 품목

□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은 김, 홍삼류, 제과류, 음료 및 차, 젓갈류, 배, 김치 등으로 주로 가공식품임.

○ LA 지역

[LA 설문업체]

- 소주 40만, 조미김 30만, 고춧가루 20만, 건어물 20만, 냉동젓갈, 반찬류 15만, 냉동우동, 냉면 15만, 소스(양념, 간장) 10만, 음료 10만, 고추장, 된장 8만, 천일염 3만

- 김 70만, 건어물 50만, 절임류 50만, 염장해조류 10만, 김말이류 20만, 차류 10만, 염장생선류 15만
- 건강보조식품 30만, 가공식품 10만
- 김 100만, 만두류 70만, 가공음료 50만, 절임가공류 50만, 한국가공음료 40만, 오징어 40만, 어묵류 40만, 국수류 35만, 과자류 20만, 빙과류 20만
- 신고배, 버섯, 선물용박스, 김
- 홍삼제품 10만, 의약품(한방감기약) 5만
- 인스턴트커피, 설탕함량 스낵류
- 홍삼정 4만, 과자류 2천, 세라믹주방기구 5만, 스테인레스주방기구 2천, 녹차 3천
- seaweed(김) 800만, chopped noode 100만, 밀가루 44만, hot pepper paste 31만, 김치 140만, beverage 160만, 커피, 차 65만, 채소 및 과일(신선) 43만, 냉동밥 45만, 가공채소 및 과일 14만
- 어묵 30만, 배 60만, 장류 10만, 건어물 20만, 곡물 10만, 쌀 6만 5천
- 홍삼정 403만, 홍삼톤류 140만, 홍삼차류 50만, 홍삼캔디류 20만, 기타 200만
- 김치 150만, 김 4만
- 와인 40만
- 배 40만, 김 35만, 쌀 10만, 장류 15만
- 홍삼류 30만, 장아찌류 17만, 젓갈류 15만, 나물류 14만, 매실류 20만, 갈치 등 10만
- 제과류 450만, 농산 및 농산가공품 200만, 수산가공 150만, 빙과류 100만, 국수류 60만, 기타 가공품 50만, 김(건 해조류 포함) 40만, 만두류 30만, 수산품 25만, 천일염 5만
- 꽁치·고등어 통조림 30만

○ 뉴욕 지역

[뉴욕 설문업체]

- 우동 10만
- 김 스낵 150만, 알로에 드링크 900만
- 조미김 12만
- 한국배 3,000만
- 김 8만, 알로에 주스 10만, 라면 5만, 홍삼제품 5만, 신고배 5만, 과자류 3만, 장류 2만
- 조미김 60만, 곡류 50만
- 아이스크림 4만, 두유 10만, 젓갈류 5만
- 신고배 227만, 김류 181만, 스낵 132만, 만두류 104만, 음료 70만, 라면류 69만, 장류 60만, 차류 51만, 냉장면 49만, 건면류 40만
- 김, 우동
- 밤 18만, 배 25만, 알로에 3만, 녹차 2만, 김 1만 3천
- 밀가루 5만, 만두 4만, 우동 4만
- 한국산 조미김 1,000만, 신고배 300만, 제주감귤 6만
- 면류, 음료, 소스류, 건조해초류, 인조꿀/꿀가루, 황금배, 스낵류, 건조수산물
- 아이스크림 85만, 김 75만, 취나물 10만, 차 25만, 물엿 6만
-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45만
- 야끼노리 50만, 조미김 3만, 스낵류 10만, 장류/젓갈류 5만, 건강식품 10만, 화장품/치약 2만

3) FTA 특혜관세 절감분 사용처

□ 응답업체의 41%가 현지에서의 판매가격 인하에 활용

○ FTA 특혜관세 적용으로 인한 관세 절감분은 응답업체의 41%가 현지에서의 판매가격 인하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3%가 현지 유통 촉진 등에, 18%가 수입물량확대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

○ 이상의 것 모두에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14.8%임.

그림 3-2. FTA 특혜관세 절감분 사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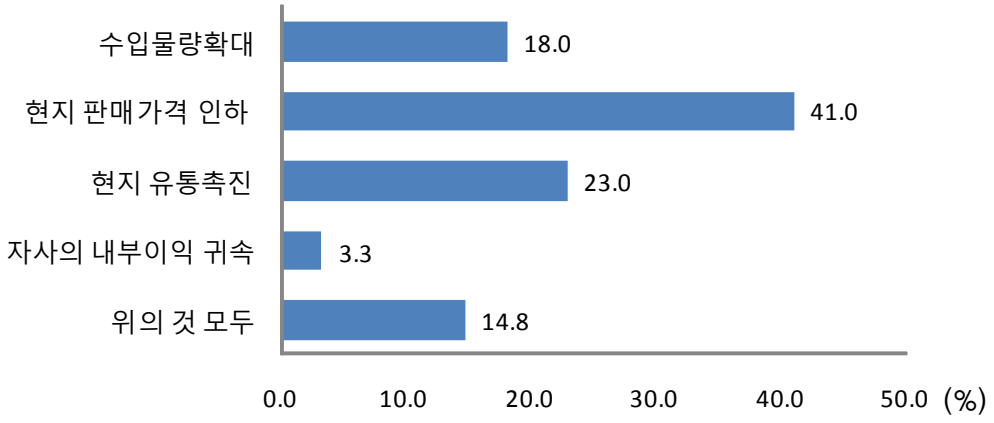

4) FTA 특혜관세 적용의 애로사항

□ 응답업체의 61%가 원산지 증명이 어렵다고 대답

○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한국산 농식품 수입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응답업체의 61.3%가 원산지 증명을 지적하였으며, 미국 세관에서의 통관이 어려웠다는 업체는 12.9%로 나타났음.

표 3-2.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의 애로사항

단위: 개, %

항목	빈도 수	비율
원산지 증명이 어려웠다	19	61.3
미국 세관에서의 통관이 어려웠다	4	12.9
기타: 한국업체에게서 관련 서류 확보하는 절차가 힘들었음 원산지 증명관련 서류작업이 늦어져 통관하는 데 어려움 한국에서 오는 샘플 통관이 까다로워 장시간 소요	8	25.8

5)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이유

□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응답업체의 22%가 △수입품이 이미 무관세이거나 특혜관세 인하 폭이 적어서, △수입품이 원산지 증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들었음.**

○ 그 다음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비용이 너무 커서 등이 뒤를 이었음.

그림 3-3. FTA 특혜관세 적용받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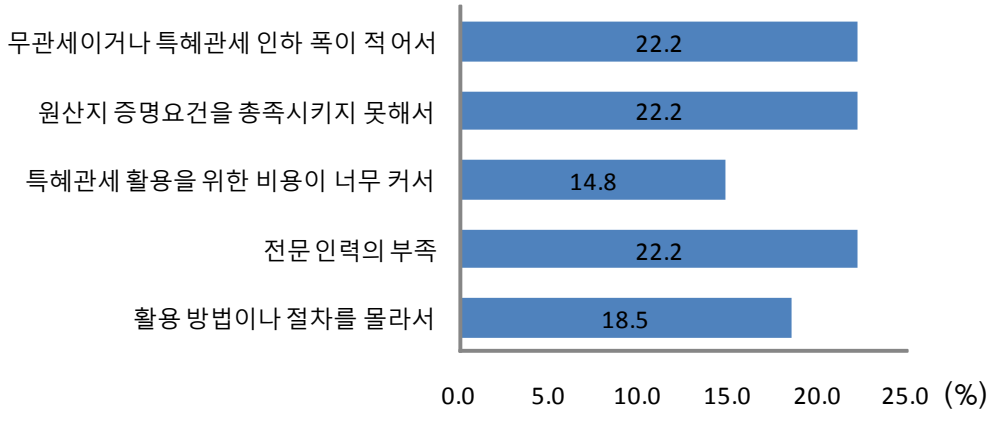

6)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애로사항

□ 현지 한국산 농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 응답업체 25%가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를 들었고, 24%가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우려를 답하였음.

○ 그 뒤를 이어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의 부족이 18.8%, 한국의 공급업체(수출업체)의 협조 부족이 16.7%를 꼽았음.

표 3-3. FTA 특혜관세 활용 관련 애로사항

단위: 개, %

항목	빈도 수	비중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	24	25.0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우려	23	24.0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사내 전문인력의 부족	9	9.4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의 부족	18	18.8
한국의 공급업체(수출업체)의 협조 부족	16	16.7
기타: 너무 많은 서류와 증명서를 받는 데 드는 시간 원료 공급업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음 관세혜택보다 관리비용 또는 향후 검증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우려 현재까지는 애로사항 없음	6	6.3

주: 복수응답 허용.

□ 이에 따라 수입업체 입장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으로

○ 응답업체의 30.7%가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의 확산을 지적하였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26.7%로 그 뒤를 이었음.

○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지원과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회사내 전문인력 지원도 각각 24%, 17.3%로 나타남.

표 3-4. 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 관련 정부 요구사항

단위: 개, %

항목	빈도 수	비중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한 금전적 지원	20	26.7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지원	18	24.0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사내 전문인력 지원	13	17.3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의 확산	23	30.7
기타: 한국제품들 관세율에 대한 전반적 교육 및 자료	1	1.3

주: 복수응답 허용.

7) 한미 FTA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한미 FTA가 전반적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업체는 78.3% (큰 도움이 됨 26.1% + 다소 도움이 됨 52.2%)로 나타났으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7.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4.3%가 있었음.

○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업체 중

- 81.1%는 한미 FTA가 수입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연결이 된 점을 가장 큰 도움으로 들었으며, 13.5%는 한미 FTA 체결로 시장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 간접효과가 발생한 점을 이유로 들었음.

○ 반면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로

- 한미 FTA가 기존 업무에 복잡성만 초래했다는 의견이 46.2%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관세인하보다는 비관세장벽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언급

그림 3-4. 한미 FTA의 기업경영 도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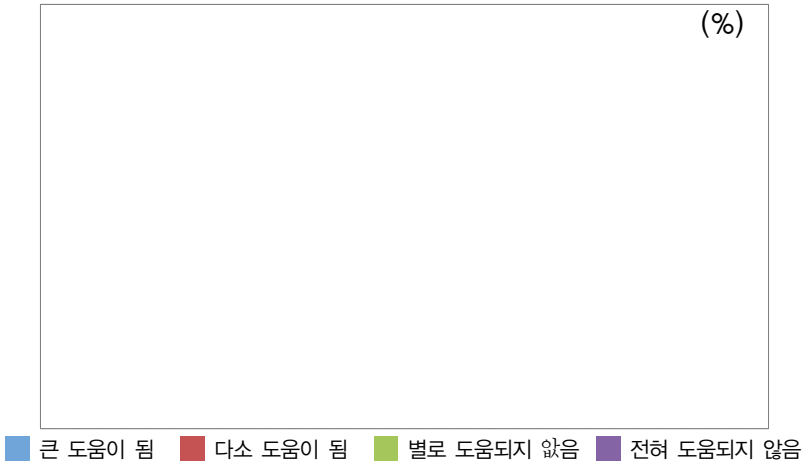

그림 3-5. 한미 FTA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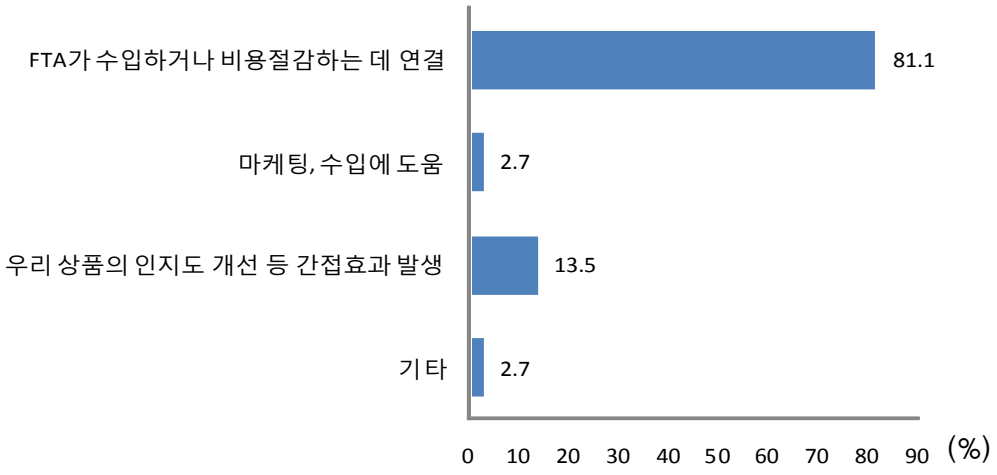

○ 이 문항에서 기타 의견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 중에는 소매업체에서 이미 모든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관세혜택을 받는 만큼의 가격인하를 요구하여 수입벤더나 도매업체들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었다는 반응도 있었음.

그림 3-6. 한미 FTA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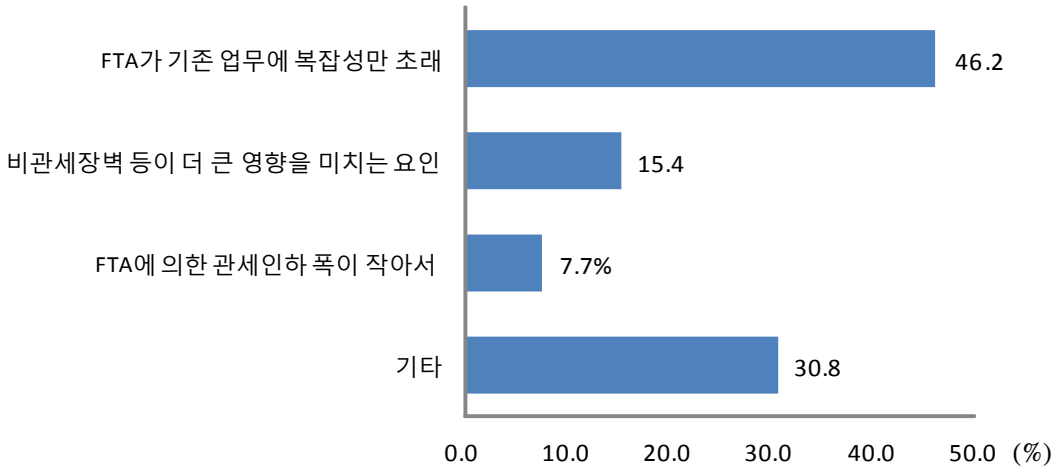

□ 한편 미국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대미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한국정부 차원의 지원책 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정책 중

○ 1순위는 현지 유통·물류창고 건설 지원 정책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저리 사업자금 융자 지원 정책을 들었음.

○ 2순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도 역시 현지 유통·물류창고 건설 지원 정책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FTA 관련 정보제공의 확대 정책을 들었음.

○ 3순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은 일대일식 맞춤형 FTA에 대한 컨설팅으로 나타났음.

표 3-5. 대미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 정책 우선순위

단위: 개, %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수	비중	빈도수	비중	빈도수	비중
저리사업자금 융자 지원	10	22.2	2	4.7	2	5.1
현지 유통·물류창고 건설 지원	14	31.1	13	30.2	3	7.7
현지 FTA 전문인력 육성 및 양성 지원	5	11.1	7	16.3	3	7.7
FTA 관련 정보 제공 확대	5	11.1	8	18.6	6	15.4
일대일식 맞춤형 FTA 컨설팅	1	2.2	3	7.0	9	23.1
원산지 검증 등 대응 지원	3	6.7	5	11.6	5	12.8
외국어 설명자료 지원	1	2.2	1	2.3	5	12.8
부품·소재 등을 납품해 주고 있는 국내 협력업체의 원산지 소명서 및 확인서 관련 협조 체계 구축	5	11.1	3	7.0	6	15.4
기타	1	2.2	1	2.3	0	0.0

표 3-6. 농수산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필요사항(현지 수입업체 관점)

[LA 업체]

- 한국 내 제조업체와는 별도로 **미국 내 직접적인 유통을 담당/진행하고 있는 현지 업체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문화적, 산업적으로의 'KOREA' 브랜드 가치는 많이 올라갔으나, '한국의 맛'은 아직 일부 품목에 제한되어 있음. 또한 비교적 영세한 식품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아직도 여전히 미비함.
  · 인간 생활의 기본은 '먹을거리'로서 한국의 맛을 미국에 알릴 수 있도록 미국 내 현지업체(미국에 물건을 파는 사람)로의 적극적인 자금투자, 인적투자가 요구되며 그것이 한국의 농수산식품 수출증대의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 현지 유통업체 중에서 **교포시장보다는 미 주류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꾀하는 회사들에게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 한국산 제품은 미국에서 품질이 높다고 인식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도 제품 가격은 매우 비싸서 retailer와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결국 판매할 수 있는 곳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포시장인데 이 또한 경쟁이 심하고 대기업들이 많아 사정이 쉽지 않음.
- 미국 현지와 겹치는 제품의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없고, 한국의 독립생산 제품은 미국에서 통관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 **미국 정부와의 한국의 농수산식품관련 정보 공유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실무적인 입장에서 좀 더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함**(Exam site 등 관련 비용 발생에 따른 지원 등), 산지와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소모적인 시간과 비용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구축, 네이밍/브랜드와 상품 디자인 등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함.
- 일부 과자류를 수입하고 있으나, 원재료 등이 모두 한국산이 아니어서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신선식품의 경우는 많이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산 가공식품을 수입할 때에 색소, 첨가물 때문에 통관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업체들에게 미국 수출에 대한 정보를 망라한 가이드북 형태의 자료(법규, 기준, 절차 등)를 배포하거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한국 내의 영세 수출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
- 중소업체들은 원산지 증명서류 구비를 잘 하지 못해서 수입업자로서 어려움이 많음. 대기업들 외에 **한국에 있는 영세수출업체들도 잘 따라 할 수 있게끔 서류구비에 대한 교육 및 전파가 필요**함.
- **소량 물량도 배송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물류 유통시스템 필요**, 특히 미국 중부 및 기타 타 주로의 배송부분이 절실
- 꾸준한 수출이 되는 FTA 품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 한국산 고유의 원료가 없는 제품들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미국 통관 시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서류준비에 대한 도움
- 현지 통관 업무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수출 전 서류 및 표기**

사항 등을 미리 교육하여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음.

-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해 정확한 기준과 규제가 필요, 중소업체들의 FTA 관련 홍보와 시행준비가 필요**
- 미국 주류 NO. 1, 2 시장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시장, 두 시장은 소주판매가 와인/맥주만 있는 업소에서도 판매 가능, 타 주에서도 상기 주와 같이 법률개정이 가능하다면 수출량을 최소 3배는 늘릴 수 있음.
- **영문 표기 및 FDA 등록 등 통관절차에 대한 수출업체의 인적 지원이 매우 필요**
-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FDA 규정, 통관 관련 조례 등을 파악하여 교육할 필요, 한국의 농수산 관련 쇼 및 식품지원전에 대한 좀 더 적극적 지원 희망**
- 한국 **농수산 식품업체의 목록과 그들의 상품과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 서로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

[뉴욕 업체]

- 한국 농수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제품군별로 고객군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고객군별로 유효한 유통채널 및 판매, 마케팅 에이전시 pool을 수립한 후, 이를 수출 및 수입업자가 각자의 책임과 비용하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즉,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비교적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수출 및 판매 확대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일반기업이 투자하기 힘든 **한국음식에 대한 문화적 요소, 쿠킹 클래스, 언론/방송 노출 등에 대한 전방위적 트렌드 형성**
- 식품의 성분들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힘들고 소량 성분이 한국산이 아니라고 하여 FTA에 적용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일정 비율 이하의 성분에 대한 것은 한국산이 아니어도 FTA에 적용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없애는** 것이 수출수입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지원(신고배 시즌에 창고 이용가능하게), 최신정보의 빠른 업데이트

- **제품 영문 표기문제 해결이 시급함.**
  - 제품 영문표기 시 현지에 맞는 제품명을 선택해야 통관 시 올바른 관세적용을 받을 수 있고 통관 시 생기는 문제를 최소로 줄일 수 있음.
  - 통관 시 **제품명을 잘못 표기해서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또 FDA, USDA, Health DEPT.에서 한국 제품규정 홍보가 안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예: 조(millet) 종류는 껍질이 한 팩에서 26개 이상 나오면 안 된다).
  - 익히지 않고 수입 유통되는 젓갈류 통관문제 등도 미국 내 홍보가 되어야 할 것 임. 또한 비슷한 제품도 제품명 표기에 따라 관세가 달라짐(예: 쿠키, 스낵, 칩, 크래커 등 과자류).
  - 한국고유의 제품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딱 맞는 제품명을 찾기란 쉽지 않음. 이유는 한국에만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임.
  - 이런 문제들은 한 수출업체가 개선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국가적으로 해야 함. 제품명을 획일화하고 관세코드에 맞게 정립을 해야 할 것임. 한국마켓에 가 보면 같은 제품의 영문표기가 모두 다른 것이 많음.
  - 현재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제품들 대부분이 한국인 수입업체를 통해서 한인이 경영하는 마켓이나 식당에 판매가 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한인 2, 3세와 외국인이 주요 구매층이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식으로 수출을 한다면 결국 외국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임.
  - 대부분의 한국 식자재나 제품들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할 때, 아직까지는 구매층이 대부분 한인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한인 2, 3, 4세도 한국음식을 좋아하고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한국말을 제대로 읽고 쓰거나 이해하지 못함.**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외국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함. 따라서 한국제품의 정확한 영문표기와 조리방법 등 표시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로 인한 수출장벽이 생기게 됨.
  - 현재도 많은 중국, 미국업체들이 김치, 고추장 등 한국고유의 제품들을 생산하려 하고 있음. 현재로서는 한국 식제품들을 수출하는 한국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소기업이나 소단위 농협인 것으로 아는데 국가적인 지

원과 관심, 홍보, 교육 없이는 발전이 힘들다고 생각함.

- 아시아국가에서 수입해 오는 제품의 경우 FTA 자체의 혜택보다는 원가를 중요시해 따져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가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에 혜택을 더 추가시키면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여겨짐.
- 한국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대외 경쟁력 상실을 만회하기 위한 세율정책, 바코드, 성분분석, 포장문제, 북미에 맞는 패키지 개발
- 모든 한국 식제품의 라벨링에 대한 data base 서비스- food service products의 확대를 통한 한국식품에 대한 저변 확대
- 대미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안에서 상품구매 과정이 다르고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대미수출 관련한 미국 내의 전문인력이 필요
  ① 미국 내 Ethnic 마켓대상 단계적으로 현지인 시장 공략; 중국고객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에게 한국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중국/한국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한국농산물 시식행사 확대; 미국 내의 언론사 활용(중국계 신문 및 케이블업체에 한국식품 및 농산물 이미지 광고 등); 인도, 파키스탄 무슬람교도, 북유럽, 남미 고객에 한류문화와 연계된 시식행사 제공
  ② 미국 내 체류하는 한국업체 및 유학생들을 활용한 우리 농수산식품 신규 수요 창출; 현지 진출기업 연계 현지 미국인 직원 및 바이어 대상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 제공 등; 미국 내 주요 대학 유학생 단체와 연계된 한국음식 알리기 행사 등을 개최
  ③ 미국 내 한인 슈퍼마켓 운영담당자 연계, 실제적인 수요 파악 및 실질 구매 확대; 미국 지역 aT센터를 통해 현지 한인 슈퍼마켓 운영담당자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추진; 수입관련 실질정보 제공 및 교육기회 제공
- 이미 포화되어 있는 한인 시장을 제외한 타 민족 시장을 개척할 때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부분을 정부에서 지원, 내지는 저금리의 융자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음.

3. 정책적 함의

□ 미국 현지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의 한미 FTA에 대한 인지나 특혜관세 적용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기 때문에 특혜관세 활용에 중점을 둘 필요

○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업체는 한미 FTA 발효로 그들이 한국산 농식품 수입 시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특혜관세 적용율이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한미 FTA 자체의 홍보 필요성보다는 실질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요건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

○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이유로 원산지 증명요건 충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필요

○ 특히 일반적인 원산지 증명지원도 필요하지만 수입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업체별 맞춤형 지원이 보다 중요하며, 이는 현지 관세사나 전문가들을 활용한 컨설팅 사업 형태가 유효할 것으로 봄.

- 현지의 관세사나 전문가(업체), 한국의 지·상사 등을 상호 연계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닥치는 공통의 문제와 특수 문제를 구분하여 대처하되 상호 network를 형성하여 know-how를 공유

○ 중·장기적으로 수출국 현지 업체 수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정부의 일정 수준의 지원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한국의 수출업체에 대해 원산지 증명요건 충족을 위한 지원이 필요

○ 현지에서의 원산지 증명요건 충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 한국의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자료협조 미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농산물 수출업체가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세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정확·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자료 제공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특히 농산물을 수출하는 영세기업의 경우 이러한 자료 제공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안전 및 위생, 상품 정보에 대한 라벨링 등 기초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이전에 통관단계에서 기초적인 상품명이나 라벨링 또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부재하여 통관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

○ 따라서 한국 내에서 수출에 앞서 미국의 통관 시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구축될 필요가 있음.

제 4 장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방안

1. 국내 생산 단계: 기본 전제 조건

가. 수출국의 통관 및 검역기준에 맞는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 특혜관세 적용을 논하기 이전에 수출 농산물이 현지의 통관기준에 맞아야 함.

○ 우리나라의 수출 농산물이 현지 통관에서 기본적인 검역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폐기·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이전의 기본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임.

○ 수출용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수출하는 국가의 기본 안전 및 검역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생산되어야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따라서 우선적으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에 앞서 통관에서 요구하는 위생검역, 라벨링 등 기초 통과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의 생산·유통·수출이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수출 농식품의 경우 초기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출시장의 검역·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적합한 생산·유통방법으로 생산과 수확 후 관리, 유통 및 포장, 라벨링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수출 농식품의 경우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생산 이후 수확이나 유통 및 포장 과정에서 다양한 식품첨가물 등이 사용될 경우에 이러한 기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수출용 농산물에 사용된 포장지도 디자인은 별도로 하더라도 검역 및 위생조건이나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성분이 포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수출 농식품의 주기지화가 일관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나. 정확한 라벨링 시스템 구축

□ 수출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영문 상품명 및 성분·함유량 정보 등의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수출용 농산물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한 영문 이름과 함께 자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HS 10단위 기준 세번이 부여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음.

○ 특히 영문 이름 이외에 해당 상품에 포함된 영양성분 및 함유량,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라벨링하는 지원체제를 병행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영문 상품명의 표기도 각양각색인 상태로 관세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관련 품명의 일관성 있는 표기 및 자동 세번 부여체계 구축이 필요

○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

2. 국내 유통 및 선전적 단계

가. 원료용 농산물 수입과 수출의 연계 시스템 구축

ㅁ 수출용 가공 농식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원료에 의존해 생산 가공 및 수출이 이루어지므로 원료 농산물 수입통관부터 원산지 증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수출 가공 농산물은 대부분 해외 농산물을 원료로 하고 있고, 이를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 가공 수출할 경우 특히 영세 수출업체는 사용된 원료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정보에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수입국의 수입업체들에게 원산지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존재함.

○ 따라서 농식품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은 특수 번호나 기호를 부여하여 통관 당시부터 수입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

나. 영세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 증명 지원

ㅁ 농산물 영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 증명 지원

○ 비교적 규모가 큰 대기업은 문제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 특히 농산물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수준의 원산지 증명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수출국에서 특혜관세 적용 시 필요로 하는 기본 영문 서류의 내용에 대한 이해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음.

○ 그리고 이것이 해외 수입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요구에 한국의 농식품 수출업체(특히 영세 수출업체)들이 해당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한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농식품 영세 수출 중소기업에게 원산지 증명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

- 관세청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aT센터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농식품 영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3. 해외 원산지 증명 지원: 해외 수입업체 관점

가. 한국 수출업체와 해외 수입업체의 연결체제 구축

□ 해외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와 한국의 수출업체를 실시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 해외에서 한국산 농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종종 실시간으로 한국의 수출업체에 대한 접촉이 어렵다는 것이 있고, 이는 한국의 수출업체가 그만큼 영세하기 때문에 적절한 접촉창구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로 귀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의 농식품 수출업체 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출업체들을 연계하는 network를 구축하여 상호 수출정보와 함께 해외 현지 수입업체와의 연계를 동시에 추구

- 농식품 수출기업협회를 조직화하고 Network 및 관련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해외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와 연계
- 웹페이지 및 홈페이지 구축 및 이를 유지·보수·운용하는 데 있어 정부 및 협회의 지원이 필요

○ 이를 통해 원산지 증명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음.

- 해외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의 요구 및 애로사항이 한국의 관련 업체에게 직접 전달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원산지 증명 문제가 해소

나. 맞춤형 원산지 증명 컨설팅

□ 해외 수입업체라도 규모와 회사 내 사정 및 취급 물품에 따라 수입 및 유통

판매전략이 상이하므로 업체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

○ 해외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라고 해도 규모에 따라 원산지 증명과 같은 지원이 필요 없는 곳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업체의 운용 know-how상 공개적인 지원 요청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획일화된 정부의 지원보다는 업체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 컨설팅 집단이 필요
- 업체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지 aT센터나 현지 수입업체조직을 중심으로 운용

다. 정보 지원 및 Network 구축

□ 미국 등 현지 시장의 통관여건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통관 정보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실시간으로 관련 업체에 전달하는 기능 필요

○ 해외의 국내 지·상사나 협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시장에 대한 통관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해당 정보를 관련 기관 및 업체에게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모니터링 system과 업체 간 연계망(network) 구축이 필요
- 업체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지 aT센터나 현지 수입업체조직을 중심으로 운용

□ 특히 특혜관세 혜택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정보의 공유는 매우 중요

○ 통관과 관련된 정보나 방침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 update하는 것이 중요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 우리나라의 농축식품 교역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점차 커지고 있어 긍정적임.

○ 수입의 경우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51%에서 2013년 63%로 약 12%p 증가했고, 수출의 경우도 2012년 13.9%에서 2013년 17.1%로 약 3%p 증가했음.

□ 그러나 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수출과 수입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FTA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우리나라 농축식품 수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약 63%인 반면 수출에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약 17%로 수출입 간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46%p에 이름.

표 5-1. FTA별 농식품 수출입 FTA 특혜관세 활용률

	특혜관세 활용률			
	수입		수출	
	2012	2013	2012	2013
한-칠레 FTA	88.3	94.3	25.2	27.7
한-싱가포르 FTA	6.2	8.4	0.0	0.0
한-EFTA FTA	73.2	78.8	50.6	46.1
한-아세안 FTA	58.7	57.0	3.1	3.1
한-인도 FTA	23.5	22.6	0.5	0.3
한-EU FTA	57.7	64.1	43.2	43.3
한-페루 FTA	90.8	92.8	52.7	9.3
한-미 FTA	44.5	71.5	26.1	36.7
한-터키 FTA	-	21.4	-	10.2
계	51.0	63.1	13.9	17.1

□ **농식품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국과 아세안 시장으로의 특혜관세 수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FTA 체결국으로의 농식품 수출 가운데 아세안과 미국의 비중이 전체의 84%에 이르는 한편,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 수출비중도 아세안과 미국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FTA 체결국으로 농식품 수출은 아세안 시장이 9억 4천만 달러로서 전체의 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미국 시장으로 5억 7천만 달러에 32%를 점유하고 있음. 아울러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시장도 미국이 2억 1천만 달러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EU, 아세안의 순임.
- 따라서 대아세안 및 대미국 수출에서의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전체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의 관건이 됨.

표 5-2. FTA별 농식품 수출입 FTA 특혜관세 활용률(2013)

단위: 천 달러, %

	전체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한-칠레 FTA	5,024	0.3	1,390	0.5	27.7
한-싱가포르 FTA	104,945	5.9	0	0.0	0.0
한-EFTA FTA	6,472	0.4	2,984	1.0	46.1
한-아세안 FTA	**939,215**	52.4	**29,525**	9.6	3.1
한-인도 FTA	11,448	0.6	38	0.0	0.3
한-EU FTA	144,393	8.1	**62,532**	20.3	43.3
한-페루 FTA	845	0.0	79	0.0	9.3
한-미 FTA	**571,773**	31.9	**209,961**	68.3	36.7
한-터키 FTA	8,287	0.5	849	0.3	10.2
계	1,792,402	100.0	307,357	100.0	17.1

자료: 관세무역개발원의 원자료를 이용해 저자 계산.

□ **한편 유별 수출액과 특혜관세 활용도를 보면 HS 05류, 19류, 21류, 23류, 24류의 특혜관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FTA 체결국으로 수출되는 전체 농식품 수출액을 유별로 구분해 보면 19류(곡물조제품 및 베이커리제품)와 21류(조제식료품), 22류(음료 및 주류), 24류(담배류)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08류(과실류, 견과류, 감귤류)와 12류(채유종자 등)임.

○ 그런데 19류, 21류, 22류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는 비중도 높아 이를 중심으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0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 08류와 12류, 23류(식물성 박류), 24류의 경우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이 부류의 수출에서 특혜관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전체 특혜관세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음.

표 5-3. 농식품 수출의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2013)

단위: 천 달러, %

HS 세번	총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792,401	100.0	307,357	100.0	17.1
01류	1,075	0.1	0	0.0	0.0
02류	27,033	1.5	70	0.0	0.3
04류	7,406	0.4	3,051	1.0	41.2
05류	171,981	9.6	0	0.0	0.0
06류	4,305	0.2	1,851	0.6	43.0
07류	30,701	1.7	12,979	4.2	42.3
08류	76,574	4.3	2,321	0.8	3.0
09류	11,655	0.7	218	0.1	1.9
10류	1,140	0.1	328	0.1	28.8
11류	36,085	2.0	3,694	1.2	10.2
12류	88,188	4.9	3,070	1.0	3.5
13류	35,747	2.0	3,735	1.2	10.4
14류	58	0.0	1	0.0	1.5
15류	56,064	3.1	6,283	2.0	11.2
16류	57,558	3.2	18,196	5.9	31.6
17류	62,326	3.5	5,294	1.7	8.5
18류	4,680	0.3	317	0.1	6.8
19류	263,545	14.7	83,465	27.2	31.7
20류	33,351	1.9	9,928	3.2	29.8
21류	362,253	20.2	110,536	36.0	30.5
22류	165,012	9.2	39,176	12.7	23.7
23류	86,619	4.8	342	0.1	0.4
24류	209,047	11.7	2,501	0.8	1.2

2. 미국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의 특혜관세 활용실태

□ 설문 참여업체 46개 중 현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거나 과거 적용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35개로, 9개 업체는 FTA 특혜관세 적용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를 실제 수입 시 적용받은 적은 없다고 답하였음.

□ 응답업체의 41%가 특혜관세 절감분을 현지에서의 판매가격 인하에 활용

○ FTA 특혜관세 적용으로 인한 관세 절감분은 응답업체의 41%가 현지에서의 판매가격 인하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3%가 현지 유통 촉진 등에, 18%가 수입물량확대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

○ 이상의 것 모두에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14.8%임.

□ 응답업체의 61%가 원산지 증명이 어렵다고 대답

○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한국산 농식품 수입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응답업체들의 61.3%가 원산지 증명을 지적하였으며, 미국 세관에서의 통관이 어려웠다는 업체들도 12.9%로 나타났음.

□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에 대해 응답업체의 22%가 △수입품이 이미 무관세이거나 특혜관세 인하 폭이 적어서, △수입품이 원산지 증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음.

□ 현지 한국산 농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 응답업체 25%가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를 들었고, 24%가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우려를 답하였음.

○ 그 뒤를 이어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의 부족이 18.8%, 한국의 공급업체(수출업체)의 협조 부족이 16.7%를 꼽았음.

□ 한편 미국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대미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한국정부 차원의 지원책 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정책 중

○ 1순위는 현지 유통·물류창고 건설 지원 정책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저리 사업자금 융자 지원 정책을 들었음. 2순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도 역시 현지 유통·물류창고 건설 지원 정책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FTA 관련 정보제공의 확대 정책을 들었음. 3순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은 일대일식 맞춤형 FTA에 대한 컨설팅으로 나타났음.

□ 미국 현지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의 한미 FTA에 대한 인지나 특혜관세 적용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기 때문에 특혜관세 활용에 중점을 둘 필요

○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업체는 한미 FTA 발효로 그들이 한국산 농식품 수입 시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특혜관세 적용율이 높다고 판단됨.

□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요건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

○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이유로 원산지 증명요건 충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필요

○ 특히 일반적인 원산지 증명지원도 필요하지만 수입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업체별 맞춤형 지원이 보다 중요하며, 이는 현지 관세사나 전문가들을 활용한 컨설팅 사업 형태가 유효할 것으로 봄.

- 현지의 관세사나 전문가(업체), 한국의 지·상사 등을 상호 연계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닥치는 공통의 문제와 특수 문제를 구분하여 대처하되 상호 network를 형성하여 know-how를 공유

○ 중·장기적으로 수출국 현지 업체 수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정부의 일정 수준의 지원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한국의 수출업체에 대해 원산지 증명요건 충족을 위한 지원이 필요

○ 현지에서의 원산지 증명요건 충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 한국의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자료협조 미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농산물 수출업체가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세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정확·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자료 제공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특히 농산물을 수출하는 영세기업의 경우 이러한 자료 제공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3.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방안

□ 특혜관세 적용을 논하기 이전에 수출 농산물이 현지의 통관기준에 맞아야 함.

○ 우리나라의 수출 농산물이 현지 통관에서 기본적인 검역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폐기·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이전의 기본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임.

○ 따라서 수출 농식품의 경우 초기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출시장의 검역·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적합한 생산·유통방법으로 생산과 수확 후 관리, 유통 및 포장, 라벨링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수출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영문 상품명 및 성분·함유량 정보 등의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수출용 농산물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한 영문 이름과 함께 자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HS 10단위 기준 세번이 부여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수출용 가공 농식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원료에 의존해 생산 가공 및 수출이 이루어지므로 원료 농산물 수입통관부터 원산지 증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수출 가공 농산물은 대부분 해외 농산물을 원료로 하고 있고, 이를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 가공 수출할 경우 특히 영세 수출업체는 사용된 원료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정보에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수입국의 수입업체들에게 원산지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존재함.

□ 농산물 영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 증명 지원

○ 비교적 규모가 큰 대기업은 문제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 특히 농산물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수준의 원산지 증명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해외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와 한국의 수출업체를 실시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 해외에서 한국산 농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종종 실시간으로 한국의 수출업체에 대한 접촉이 어렵다는 것이 있고 이는 한국의 수출업체가 그만큼 영세하기 때문에 적절한 접촉창구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로 귀착되고 있음.

□ 해외 수입업체라도 규모와 회사 내 사정 및 취급 물품에 따라 수입 및 유통 판매전략이 상이하므로 업체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

○ 업체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지 aT센터나 현지 수입업체조직을 중심으로 운용

□ 미국 등 현지 시장의 통관여건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통관 정보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실시간으로 관련 업체에 전달하는 기능 필요

○ 해외의 국내 지·상사나 협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시장에 대한 통관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해당 정보를 관련 기관 및 업체에게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모니터링 system과 업체 간 연계망(network) 구축이 필요

참고 문헌

김석오. 2011.『FTA 원산지검증 현황과 대응전략』. 미국·EU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세미나.

김한성 외. 2008.『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08-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병인. 2011.『FTA 원산지와 품목분류』. 미국·EU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세미나.

문상태. 2011.『FTA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미국·EU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세미나.

문한필 외. 2014.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실태와 요인 분석.”『무역학회지』.

어명근 외. 2010.『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방안 1/2차연도』. 협동연구 총서 10-23-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 2011.『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방안 2/2차연도』. 협동연구 총서 11-22-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병훈. 2014. “2013년 농식품 수출동향과 2014년 전망.”『aT Focus』1월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인교 외. 2005.『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연구 05-21. 한국경제연구원.

_____. 2007.『FTA 원산지기준의 파급영향 분석』. 연구총서 07-02.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최연수. 2013.『한-EU FTA 활용극대화를 위한 EU 측 원산지 제도 연구』. 관세청: 장기국외보고서.

최재섭. 2012. “한국 농산물의 대미수출 확대를 위한 실증 연구.”『관세학회지』14(1): 255-270. 한국관세학회.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2014. FTA 무역 리포트.

부 록

1. FTA별 농식품 수출입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

(초기 0세율 포함)

1-1. 총괄(2013)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15.4	2,225,928,797	343,090,650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17.1	1,792,401,653	307,357,495
1류	0.0	1,074,619	0
2류	0.3	27,033,174	70,125
4류	41.2	7,406,064	3,051,498
5류	0.0	171,980,798	0
6류	43.0	4,305,187	1,851,353
7류	42.3	30,700,991	12,979,301
8류	3.0	76,574,129	2,321,074
9류	1.9	11,654,518	218,308
10류	28.8	1,140,333	328,165
11류	10.2	36,084,921	3,693,812
12류	3.5	88,188,383	3,069,843
13류	10.4	35,747,175	3,735,381
14류	1.5	57,670	850
15류	11.2	56,063,587	6,282,850
16류	31.6	57,557,531	18,196,101
17류	8.5	62,325,634	5,294,131
18류	6.8	4,679,825	316,771
19류	31.7	263,545,387	83,464,821
20류	29.8	33,350,976	9,927,869
21류	30.5	362,253,416	110,536,185
22류	23.7	165,011,552	39,176,356
23류	0.4	86,618,740	342,032
24류	1.2	209,047,043	2,500,669

1-2. 총괄(2012)

	특혜관세 활용률	수입액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
특혜관세 활용률	62.9	12,218,262,997	8,087,019,894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63.1	11,167,395,727	7,427,503,210
1류	52.3	41,113,237	21,506,636
2류	99.7	1,451,805,315	1,447,928,986
4류	85.8	499,485,342	428,904,319
5류	66.3	77,105,879	50,361,064
6류	73.7	19,865,681	14,641,187
7류	18.4	181,202,285	32,958,297
8류	67.5	1,263,316,277	864,719,257
9류	88.7	254,758,552	228,643,607
10류	29.5	1,142,499,132	457,724,825
11류	33.6	108,596,814	36,509,557
12류	15.0	781,177,724	118,795,425
13류	78.4	81,472,726	70,689,215
14류	78.3	16,543,955	16,115,372
15류	70.4	707,478,149	506,648,718
16류	71.7	402,812,965	288,687,261
17류	36.3	569,525,698	206,816,677
18류	76.5	349,154,082	267,040,803
19류	62.8	326,378,778	204,831,434
20류	78.2	519,865,645	408,593,854
21류	60.9	791,377,301	481,224,806
22류	82.7	541,769,677	453,497,788
23류	74.5	850,551,160	707,407,864
24류	50.8	189,539,353	113,256,258

2-1. 한-칠레 FTA(2013)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26.7	5,454,673	1,453,989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27.7	5,023,990	1,390,103
1류	0.0	0	0
2류	0.0	0	0
4류	0.0	0	0
5류	0.0	0	0
6류	0.0	0	0
7류	100.0	980	980
8류	0.0	241,625	0
9류	0.4	10,739	47
10류	0.0	0	0
11류	91.3	9,608	8,776
12류	88.7	198,410	176,074
13류	3.7	122,770	4,518
14류	0.0	0	0
15류	46.5	190,204	88,534
16류	86.7	112,487	97,574
17류	7.4	15,063	1,118
18류	0.0	3,675	0
19류	25.6	1,756,007	450,226
20류	81.2	37,464	30,434
21류	29.2	690,073	201,277
22류	37.0	841,773	311,623
23류	0.0	644,400	0
24류	12.7	148,712	18,922

2-2. 한-칠레 FTA(2012)

	특혜관세 활용률	수입액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
특혜관세 활용률	94.7	516,700,726	489,429,830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94.3	433,147,298	408,541,532
1류	0.0	532	0
2류	99.3	104,267,742	103,537,695
4류	92.9	6,899,851	6,408,737
5류	99.9	1,815,543	1,813,702
6류	100.0	944,906	944,906
7류	100.0	42,316	42,316
8류	91.6	205,377,348	188,211,659
9류	0.0	2,040	0
10류	0.0	7,744	0
11류	99.5	8,475	8,433
12류	17.5	5,461,590	958,483
13류	0.0	25,103	0
14류	0.0	0	0
15류	99.4	4,488,613	4,463,534
16류	99.8	3,268,301	3,261,243
17류	100.0	868,395	868,171
18류	0.0	336	0
19류	36.7	178,514	65,427
20류	99.9	33,177,295	33,142,131
21류	93.4	174,001	162,522
22류	96.5	36,458,438	35,194,522
23류	99.3	29,680,215	29,458,051
24류	0.0	0	0

3-1. 한-싱가포르 FTA(2013)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0.0	111,415,619	0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0.0	104,945,299	0
1류	0.0	2,000	0
2류	0.0	2,261	0
4류	0.0	397,725	0
5류	0.0	0	0
6류	0.0	17,070	0
7류	0.0	1,833,639	0
8류	0.0	13,492,376	0
9류	0.0	2,032,371	0
10류	0.0	101,226	0
11류	0.0	2,691,996	0
12류	0.0	2,463,447	0
13류	0.0	1,176,423	0
14류	0.0	0	0
15류	0.0	15,201,487	0
16류	0.0	496,304	0
17류	0.0	1,305,296	0
18류	0.0	204,658	0
19류	0.0	10,638,544	0
20류	0.0	2,170,686	0
21류	0.0	18,306,040	0
22류	0.0	12,078,176	0
23류	0.0	357,481	0
24류	0.0	19,976,093	0

3-2. 한-싱가포르 FTA(2012)

	특혜관세 활용률	수입액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
특혜관세 활용률	8.2	96,762,597	7,931,044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8.4	94,665,410	7,924,108
1류	0.0	1,040	0
2류	0.0	0	0
4류	0.0	312,207	0
5류	0.0	0	0
6류	42.5	30,923	13,135
7류	0.0	324,691	0
8류	0.0	715	0
9류	0.0	928,229	0
10류	0.0	75	0
11류	0.0	2,524,594	0
12류	0.0	8,595	0
13류	0.0	272,741	0
14류	0.0	0	0
15류	2.7	12,254,971	331,968
16류	98.2	938,101	920,924
17류	0.0	844,639	0
18류	0.3	40,728,342	134,849
19류	0.0	1,227,206	0
20류	7.3	1,529,794	111,432
21류	30.4	20,327,653	6,179,822
22류	16.6	868,606	144,478
23류	1.6	5,533,947	87,500
24류	0.0	6,008,341	0

4-1. 한 - EFTA FTA(2013)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49.3	9,132,664	4,502,040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46.1	6,471,547	2,984,422
1류	0.0	600	0
2류	0.0	0	0
4류	0.0	0	0
5류	0.0	0	0
6류	0.0	13,000	0
7류	100.0	41,945	41,945
8류	0.0	0	0
9류	0.0	38,149	0
10류	0.0	0	0
11류	0.0	0	0
12류	25.6	251,912	64,463
13류	1.0	300,505	2,944
14류	0.0	0	0
15류	1.6	2,183,053	35,800
16류	0.0	0	0
17류	0.0	1,430	0
18류	0.0	5,055	0
19류	90.5	2,981,044	2,696,524
20류	0.9	10,822	102
21류	37.0	232,074	85,876
22류	17.3	212,192	36,807
23류	0.0	9,005	0
24류	10.5	190,761	19,961

4-2. 한 - EFTA FTA(2012)

	특혜관세 활용률	수입액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
특혜관세 활용률	76.6	198,807,891	152,214,635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78.8	72,998,868	57,494,996
1류	0.0	208	0
2류	0.0	0	0
4류	14.3	3,562,505	510,513
5류	0.0	38,423	0
6류	98.9	47,257	46,722
7류	0.0	7,635	0
8류	0.0	0	0
9류	99.0	20,759,446	20,561,712
10류	0.0	2	0
11류	0.0	215,792	0
12류	0.0	10,889	0
13류	98.5	10,246,449	10,091,567
14류	0.0	0	0
15류	37.1	2,361,279	876,746
16류	99.6	5,101,302	5,080,731
17류	91.2	2,033,675	1,854,534
18류	73.2	8,838,938	6,471,418
19류	55.7	1,605,513	893,604
20류	28.0	996,256	278,929
21류	90.5	11,558,660	10,463,629
22류	56.4	457,593	257,988
23류	4.1	2,576,585	106,903
24류	0.0	2,580,461	0

5-1. 한 - 아세안 FTA(2013)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2.5	1,184,634,779	29,694,502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3.1	939,215,376	29,524,679
1류	0.0	157,879	0
2류	0.0	26,591,651	0
4류	0.0	1,974,008	0
5류	0.0	169,405,826	0
6류	0.0	185,755	0
7류	4.6	10,122,422	462,378
8류	0.1	29,478,869	26,303
9류	0.0	3,689,833	0
10류	0.8	577,045	4,740
11류	0.0	26,093,374	0
12류	0.9	49,164,754	436,596
13류	0.2	8,890,177	20,736
14류	0.0	17,550	0
15류	8.4	33,594,424	2,818,126
16류	0.0	6,054,238	0
17류	0.1	48,547,386	28,694
18류	0.0	2,861,131	0
19류	4.4	87,402,623	3,827,679
20류	0.4	9,167,330	41,069
21류	12.4	169,370,674	21,009,089
22류	0.1	62,892,183	68,098
23류	0.0	82,961,355	0
24류	0.7	110,014,889	781,171

5-2. 한 - 아세안 FTA(2013)

	특혜관세 활용률	수입액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
특혜관세 활용률	56.9	3,333,091,804	1,895,082,090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57.0	2,780,096,898	1,584,500,183
1류	12.3	1,780,022	218,503
2류	98.1	110,082	107,964
4류	3.8	603,592	22,795
5류	57.3	1,046,570	599,965
6류	30.6	5,528,999	1,689,525
7류	3.9	152,111,681	5,969,011
8류	1.5	351,075,227	5,241,917
9류	93.8	120,045,077	112,578,037
10류	0.0	29,911,362	0
11류	38.0	30,143,589	11,440,285
12류	57.7	24,630,865	14,200,468
13류	88.7	6,095,386	5,404,905
14류	97.8	8,586,259	8,394,043
15류	93.4	451,911,865	422,227,314
16류	55.2	229,755,424	126,887,898
17류	30.2	460,589,358	138,944,517
18류	96.5	70,612,364	68,162,940
19류	79.5	100,138,635	79,639,297
20류	48.5	147,083,457	71,378,608
21류	58.6	79,278,805	46,434,190
22류	65.5	46,753,929	30,640,807
23류	95.8	382,229,089	366,147,285
24류	85.1	80,075,261	68,169,909

6-1. 한-인도 FTA(2013)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0.1	11,450,139	37,500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0.3	11,448,274	37,500
1류	0.0	700	0
2류	0.0	8,230	0
4류	0.0	0	0
5류	0.0	0	0
6류	0.0	0	0
7류	0.0	1,167	0
8류	0.0	123,324	0
9류	0.0	110,189	0
10류	0.0	1,848	0
11류	0.0	6,059	0
12류	0.0	4,601,363	0
13류	0.0	377,391	0
14류	0.0	0	0
15류	0.0	310,041	0
16류	0.0	201,032	0
17류	0.0	772,619	0
18류	0.0	7,750	0
19류	0.0	566,683	0
20류	0.0	14,573	0
21류	2.4	1,591,109	37,500
22류	0.0	422,818	0
23류	0.0	526,073	0
24류	0.0	1,805,305	0

6-2. 한-인도 FTA(2012)

	특혜관세 활용률	수입액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
특혜관세 활용률	22.6	991,130,391	224,247,203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22.6	954,571,003	215,820,159
1류	0.0	317	0
2류	0.0	0	0
4류	0.0	172,630	0
5류	82.5	4,695,480	3,873,199
6류	75.1	429,764	322,906
7류	65.4	646,674	423,039
8류	1.0	18,376,434	188,550
9류	46.5	6,152,516	2,859,686
10류	0.0	410,723,242	8,376
11류	5.9	242,090	14,210
12류	12.8	82,214,866	10,564,329
13류	23.0	12,346,366	2,841,629
14류	58.9	16,324,895	9,612,080
15류	11.6	14,140,283	1,643,223
16류	72.6	907,453	658,433
17류	11.9	668,148	79,480
18류	0.0	2,502	0
19류	79.1	357,634	283,011
20류	0.5	2,504,205	12,000
21류	70.8	5,043,814	3,571,217
22류	1.3	6,524,005	81,878
23류	52.8	337,602,600	178,327,603
24류	1.3	34,495,085	455,310

7-1. 한-EU FTA(2013)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43.1	222,864,812	96,024,571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43.3	144,392,647	62,532,208
1류	0.0	548,222	0
2류	0.0	158,148	0
4류	12.6	122,479	15,472
5류	0.0	1,711,114	0
6류	29.3	2,008,804	587,892
7류	69.0	7,482,872	5,162,351
8류	13.9	1,954,327	271,376
9류	1.0	1,006,940	9,665
10류	71.8	158,010	113,406
11류	37.1	583,314	216,449
12류	37.9	4,766,736	1,804,740
13류	0.0	11,300,961	5,495
14류	0.0	29,923	0
15류	81.4	1,978,864	1,610,998
16류	72.6	14,274,448	10,359,880
17류	18.6	5,021,307	935,975
18류	43.0	331,665	142,479
19류	62.8	33,169,514	20,834,596
20류	40.5	5,024,131	2,036,285
21류	44.0	21,606,134	9,514,599
22류	44.7	18,401,083	8,232,560
23류	9.8	1,816,592	177,449
24류	4.6	10,937,059	500,541

7-2. 한-EU FTA(2012)

	특혜관세 활용률	수입액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
특혜관세 활용률	63.4	2,595,822,361	1,646,348,842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64.1	2,550,148,490	1,635,046,639
1류	24.0	11,820,248	2,835,546
2류	99.8	393,336,665	392,719,551
4류	83.9	235,625,275	197,710,689
5류	37.9	34,143,936	12,949,218
6류	91.7	11,899,811	10,906,701
7류	83.1	2,053,486	1,706,479
8류	92.1	2,143,917	1,974,281
9류	68.0	32,757,685	22,276,222
10류	0.0	445,831,331	48,416
11류	26.8	66,873,803	17,947,662
12류	20.1	23,249,991	4,677,362
13류	90.7	43,486,768	39,445,422
14류	49.1	55,967	27,470
15류	40.8	122,959,299	50,153,402
16류	96.0	73,156,191	70,244,821
17류	73.0	57,015,624	41,620,844
18류	84.1	135,598,491	114,060,085
19류	55.9	117,850,906	65,901,674
20류	86.4	54,652,676	47,211,512
21류	80.4	172,556,903	138,731,102
22류	85.5	387,768,706	331,604,344
23류	74.0	79,361,905	58,689,524
24류	25.3	45,948,906	11,604,312

8-1. 한-페루 FTA(2013)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9.3	844,711	78,934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9.3	844,711	78,934
1류	0.0	0	0
2류	0.0	0	0
4류	0.0	1,081	0
5류	0.0	0	0
6류	0.0	0	0
7류	0.0	0	0
8류	0.0	192	0
9류	0.0	2,175	0
10류	0.0	22	0
11류	0.0	0	0
12류	0.0	62,629	0
13류	0.0	0	0
14류	0.0	0	0
15류	0.0	0	0
16류	100.0	526	526
17류	0.0	0	0
18류	0.0	2,150	0
19류	8.9	301,943	26,926
20류	0.0	1,492	0
21류	0.0	179,547	0
22류	29.8	139,206	41,485
23류	0.0	29,960	0
24류	8.1	123,788	9,997

8-2. 한-페루 FTA(2012)

	특혜관세 활용률	수입액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
특혜관세 활용률	91.9	130,185,907	119,631,695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92.8	107,436,160	99,668,913
1류	0.0	806	0
2류	0.0	0	0
4류	0.0	178	0
5류	98.7	350,917	346,523
6류	0.0	0	0
7류	96.4	1,419,329	1,367,685
8류	94.3	15,979,749	15,068,108
9류	99.6	37,065,346	36,923,477
10류	0.0	233,874	0
11류	19.6	9,409	1,840
12류	1.1	2,555,740	28,648
13류	85.2	138,412	117,890
14류	0.0	85,919	0
15류	97.6	4,455,290	4,347,455
16류	91.5	41,815,060	38,253,279
17류	0.0	18	0
18류	97.2	138,669	134,843
19류	0.0	1,326	0
20류	92.0	155,159	142,785
21류	0.0	1,112	0
22류	100.0	39,721	39,721
23류	96.9	2,990,126	2,896,659
24류	0.0	0	0

9-1. 한-미 FTA(2013)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31.3	671,644,447	210,261,086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36.7	571,772,730	209,960,999
1류	0.0	364,918	0
2류	25.7	272,884	70,125
4류	61.8	4,910,771	3,036,026
5류	0.0	863,858	0
6류	60.7	2,080,558	1,263,461
7류	65.2	11,217,348	7,311,344
8류	6.5	31,282,116	2,023,395
9류	4.4	4,764,104	208,596
10류	69.5	302,160	210,019
11류	51.8	6,700,380	3,468,587
12류	2.0	25,095,012	506,667
13류	27.5	13,433,481	3,700,012
14류	8.3	10,197	850
15류	65.5	2,534,404	1,659,152
16류	21.3	36,355,193	7,738,121
17류	66.4	5,961,633	3,959,244
18류	14.0	1,242,216	174,292
19류	43.8	126,359,280	55,399,900
20류	46.1	16,853,307	7,774,987
21류	53.4	149,249,163	79,677,675
22류	43.7	69,692,035	30,477,884
23류	68.3	197,174	134,633
24류	1.9	62,030,538	1,166,029

9-2. 한-미 FTA(2012)

	특혜관세 활용률	수입액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
특혜관세 활용률	71.4	5,272,031,199	3,763,166,806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71.5	5,067,269,891	3,621,111,887
1류	67.2	27,463,886	18,452,587
2류	99.7	954,090,826	951,563,776
4류	89.5	250,584,703	224,251,585
5류	87.7	38,991,910	34,211,556
6류	73.9	1,406,889	1,040,198
7류	95.0	25,137,120	23,872,806
8류	95.4	682,853,479	651,470,767
9류	84.7	42,455,899	35,953,534
10류	70.3	651,137,676	457,676,409
11류	94.1	7,560,741	7,111,337
12류	13.6	724,879,762	98,898,476
13류	74.1	21,056,428	15,595,368
14류	98.4	7,815,390	7,693,859
15류	22.7	105,368,078	23,935,596
16류	93.6	42,455,314	39,720,105
17류	49.5	45,557,147	22,555,579
18류	83.8	92,510,532	77,557,316
19류	55.6	102,094,395	56,774,076
20류	91.7	278,056,228	254,959,036
21류	55.0	506,980,238	278,983,630
22류	80.1	69,171,355	55,403,152
23류	71.9	347,826,325	249,949,102
24류	80.1	41,815,570	33,482,037

10-1. 한-터키 FTA(2013)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12.2	8,486,953	1,038,028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10.2	8,287,079	848,650
1류	0.0	300	0
2류	0.0	0	0
4류	0.0	0	0
5류	0.0	0	0
6류	0.0	0	0
7류	49.0	618	303
8류	0.0	1,300	0
9류	0.0	18	0
10류	0.0	22	0
11류	0.0	190	0
12류	5.1	1,584,120	81,303
13류	1.2	145,467	1,676
14류	0.0	0	0
15류	98.8	71,110	70,240
16류	0.0	63,303	0
17류	52.7	700,900	369,100
18류	0.0	21,525	0
19류	61.9	369,749	228,970
20류	63.2	71,171	44,992
21류	1.0	1,028,602	10,169
22류	2.4	332,086	7,899
23류	39.0	76,700	29,950
24류	0.1	3,819,898	4,048

2. 2013년 FTA별 농식품 수출입 유별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계산시 초기 0세율 제외)

1. 총괄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18.1	1,811,707,065	328,332,798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22.8	1,330,539,443	303,765,263
1류	0.0	127,423	0
2류	0.3	26,384,950	70,125
4류	47.2	6,470,366	3,051,498
5류	0.1	169,709,155	235,200
6류	46.8	3,954,566	1,851,364
7류	51.8	24,105,899	12,493,749
8류	10.9	21,246,166	2,319,421
9류	4.5	4,870,468	218,308
10류	35.6	922,808	328,165
11류	15.6	23,010,313	3,591,709
12류	4.7	56,771,115	2,655,231
13류	20.0	18,687,062	3,733,907
14류	5.0	17,150	850
15류	25.6	21,593,552	5,526,103
16류	56.4	31,248,785	17,638,125
17류	9.1	56,101,662	5,126,640
18류	4.7	4,075,718	190,141
19류	37.5	221,953,019	83,134,498
20류	37.0	26,561,903	9,835,770
21류	37.4	294,879,017	110,238,060
22류	31.1	124,718,421	38,834,268
23류	0.9	24,684,404	227,984
24류	1.5	168,445,521	2,464,147

2. 한-칠레 FTA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26.7	5,454,673	1,453,989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27.7	5,023,990	1,390,103
1류	-	0	0
2류	-	0	0
4류	-	0	0
5류	-	0	0
6류	-	0	0
7류	100.0	980	980
8류	-	241,625	0
9류	0.4	10,739	47
10류	-	0	0
11류	91.3	9,608	8,776
12류	88.7	198,410	176,074
13류	3.7	122,770	4,518
14류	-	0	0
15류	46.5	190,204	88,534
16류	86.7	112,487	97,574
17류	7.4	15,063	1,118
18류	-	3,675	0
19류	25.6	1,756,007	450,226
20류	81.2	37,464	30,434
21류	29.2	690,073	201,277
22류	37.0	841,773	311,623
23류	-	644,400	0
24류	12.7	148,712	18,922

3.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0	0	0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0	0	0
1류	0	0	0
2류	0	0	0
4류	0	0	0
5류	0	0	0
6류	0	0	0
7류	0	0	0
8류	0	0	0
9류	0	0	0
10류	0	0	0
11류	0	0	0
12류	0	0	0
13류	0	0	0
14류	0	0	0
15류	0	0	0
16류	0	0	0
17류	0	0	0
18류	0	0	0
19류	0	0	0
20류	0	0	0
21류	0	0	0
22류	0	0	0
23류	0	0	0
24류	0	0	0

4. 한-EFTA FTA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84.6	5,318,876	2546043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78.5	3,801,163	2,984,422
1류	0.0	300	0
2류	0.0	0	0
4류	0.0	0	0
5류	0.0	0	0
6류	0.0	0	0
7류	100.0	41,945	41,945
8류	0.0	0	0
9류	0.0	33,867	0
10류	0.0	0	0
11류	0.0	0	0
12류	100.0	64,463	64,463
13류	2.4	123,962	2,944
14류	0.0	0	0
15류	100.0	35,800	35,800
16류	0.0	0	0
17류	0.0	1,430	0
18류	0.0	5,055	0
19류	91.1	2,961,299	2,696,524
20류	0.9	10,822	102
21류	37.5	229,011	85,876
22류	17.4	212,040	36,807
23류	0.0	5	0
24류	24.6	81,164	19,961

5.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2.5	1,184,634,779	29,707,765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3.9	752,446,536	29,537,942
1류	0.0	126,123	0
2류	0.0	26,155,926	0
4류	0.0	1,469,187	0
5류	0.0	169,298,789	0
6류	0.0	62,982	0
7류	7.7	6,027,061	462,378
8류	0.2	15,945,256	26,303
9류	0.0	1,297,509	0
10류	1.0	462,062	4,740
11류	0.0	16,066,199	0
12류	1.0	44,510,336	436,596
13류	0.3	6,640,319	20,736
14류	0.0	16,300	0
15류	15.9	17,669,679	2,818,126
16류	0.0	4,600,415	0
17류	0.1	46,999,832	28,694
18류	0.0	2,656,473	0
19류	5.1	76,023,276	3,840,942
20류	0.7	5,681,873	41,069
21류	14.3	147,080,406	21,009,089
22류	0.1	50,452,513	68,098
23류	0.0	23,165,224	0
24류	0.9	90,038,796	781,171

6. 한-인도 FTA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0.3	11,450,139	37,500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0.3	11,448,274	37,500
1류	0.0	700	0
2류	0.0	8,230	0
4류	0.0	0	0
5류	0.0	0	0
6류	0.0	0	0
7류	0.0	1,167	0
8류	0.0	123,324	0
9류	0.0	110,189	0
10류	0.0	1,848	0
11류	0.0	6,059	0
12류	0.0	4,601,363	0
13류	0.0	377,391	0
14류	0.0	0	0
15류	0.0	310,041	0
16류	0.0	201,032	0
17류	0.0	772,619	0
18류	0.0	7,750	0
19류	0.0	566,683	0
20류	0.0	14,573	0
21류	2.4	1,591,109	37,500
22류	0.0	422,818	0
23류	0.0	526,073	0
24류	0.0	1,805,305	0

7. 한-EU FTA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51.6	160,876,543	82,974,891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51.3	114,511,866	58,692,151
1류	0.0	0	0
2류	0.0	0	0
4류	17.3	89,327	15,472
5류	0.0	0	0
6류	32.4	1,812,026	587,903
7류	68.6	6,816,780	4,676,799
8류	13.9	1,947,199	269,723
9류	3.4	286,961	9,665
10류	72.4	156,716	113,406
11류	25.0	457,776	114,526
12류	57.2	2,431,609	1,390,128
13류	85.1	4,725	4,021
14류	0.0	0	0
15류	74.2	1,150,881	854,251
16류	75.4	12,995,996	9,801,904
17류	23.4	3,281,165	768,484
18류	11.1	142,938	15,849
19류	63.0	32,536,233	20,491,010
20류	40.1	4,848,084	1,944,644
21류	48.2	19,110,991	9,216,474
22류	50.6	15,602,680	7,890,472
23류	77.4	81,900	63,401
24류	4.3	10,757,879	464,019

8. 한-페루 FTA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26.6	296,938	78,934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26.6	296,938	78,934
1류	0.0	0	0
2류	0.0	0	0
4류	0.0	1,081	0
5류	0.0	0	0
6류	0.0	0	0
7류	0.0	0	0
8류	0.0	192	0
9류	0.0	2,052	0
10류	0.0	0	0
11류	0.0	0	0
12류	0.0	0	0
13류	0.0	0	0
14류	0.0	0	0
15류	0.0	0	0
16류	100.0	526	526
17류	0.0	0	0
18류	0.0	2,150	0
19류	100.0	26,926	26,926
20류	0.0	1,492	0
21류	0.0	0	0
22류	29.9	138,731	41,485
23류	0.0	0	0
24류	8.1	123,788	9,997

9.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48.3	435,548,723	210495648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48.3	435,084,156	210195561
1류	-	0	0
2류	31.8	220,794	70,125
4류	61.8	4,910,771	3,036,026
5류	57.3	410,366	235,200
6류	60.8	2,079,558	1,263,461
7류	65.2	11,217,348	7,311,344
8류	67.7	2,987,270	2,023,395
9류	6.7	3,129,133	208,596
10류	69.5	302,160	210,019
11류	53.6	6,470,481	3,468,407
12류	15.0	3,380,814	506,667
13류	32.8	11,272,428	3,700,012
14류	100.0	850	850
15류	76.6	2,165,837	1,659,152
16류	58.3	13,275,026	7,738,121
17류	91.4	4,330,653	3,959,244
18류	14.1	1,236,152	174,292
19류	51.4	107,712,846	55,399,900
20류	48.9	15,896,424	7,774,529
21류	63.7	125,148,825	79,677,675
22류	53.7	56,715,780	30,477,884
23류	70.8	190,102	134,633
24류	1.9	62,030,538	1,166,029

10. 한-터키 FTA

	특혜관세 활용률	수출액	특혜관세 적용 수출액
특혜관세 활용률	12.8	8,126,394	1,038,028
특혜관세 활용률 (03류 제외)	10.7	7,926,520	848,650
1류	0.0	300	0
2류	0.0	0	0
4류	0.0	0	0
5류	0.0	0	0
6류	0.0	0	0
7류	49.0	618	303
8류	0.0	1,300	0
9류	0.0	18	0
10류	0.0	22	0
11류	0.0	190	0
12류	5.1	1,584,120	81,303
13류	1.2	145,467	1,676
14류	0.0	0	0
15류	98.8	71,110	70,240
16류	0.0	63,303	0
17류	52.7	700,900	369,100
18류	0.0	21,525	0
19류	61.9	369,749	228,970
20류	63.2	71,171	44,992
21류	1.0	1,028,602	10,169
22류	2.4	332,086	7,899
23류	39.0	76,700	29,950
24류	0.1	3,459,339	4,048

3. 해외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 설문지

FTA 특혜관세 활용 제고를 위한 현지 수입업체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제경제와 대외무역, 세계 지역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한 결과 미국 등 세계 50여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FTA를 체결해도 실제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FTA의 효과는 반감됩니다. 이에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미국 현지에서 한국의 농수산식품을 수입하는 주요 수입업체들의 FTA 특혜관세 활용에 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사와 관련된 설문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거 통계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유출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 관련 문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02)-3460-1156, jksuh@kiep.go.kr

Ⅰ. 회사 및 응답자 정보(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회사명	
회사 규모	1. 고용 인원 수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2. 평균 매출액 ( )
3. 수입하는 품목군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4. 주요 수입 품목	(여러 개인 경우 수입액 상위 6개 품목만) 1. 2. 3. 4. 5. 6.

5.2013년 수입액	① 10만 달러 미만 ② 10만~50만 달러 ③ 50만~100만 달러 ④ 100만~500만 달러 ⑤ 500만~1000만 달러 ⑥ 1000만 달러 이상
6. 수입품목 유형	① 신선(단순 가공) ② 가공 ③ 신선 및 가공
7. 기타 수입국가	한국 이외 다른 나라에서 농식품(가공식품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입국가(여러 개인 경우 수입액 상위 4개 국가) 1. 2. 3. 4.

◆ 먼저 FTA 활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사(하)가 한국에서 농수산식품을 수입할 경우 미국 현지 세관통관에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일반 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는 있다.
③ 모른다. 또는 처음 들어 본다.

2. 만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신다면 귀사는 한국에서 농식품을 수입할 경우 현재 해당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계십니까?

① 적용받고 있거나 과거 적용받은 적 있다(3~6번 질문으로 이동).
② 적용받은 적이 없다(7번 질문 응답).

(3~6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거나 과거 적용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3. (FTA 특혜관세 규모) 한국산 농식품 수입 시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계신다면 해당 품목은 무엇입니까? 상위 10개 해당 품목과 2013년도 대략적인 수입액을 적어 주세요.

순위	품명	수입액
1		
2		
3		
4		
5		
6		
7		
8		
9		
10		
기타		

4. (FTA 수출 활용) 귀사가 한국산 농식품 수입 시 FTA 특혜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절감분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수입 물량 확대에 활용
② 현지 판매가격 인하에 활용
③ 현지 유통촉진 등에 활용
④ 자사의 내부 이익으로 귀속
⑤ 위의 것 모두에 부분적으로 활용
⑥ 기타(_____)

5. (다른 나라와의 거래) 혹시 멕시코나 캐나다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고 계신다면 주로 어떤 품목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① 수입하고 있지 않다.
② 수입하고 계신다면 아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2013년 기준).

수입국	주요 품목		수입액
멕시코	1		
	2		
	3		
	4		
	5		
	총계		
캐나다	1		
	2		
	3		
	4		
	5		
	총계		

5.1 (다른 나라와 FTA 활용률) 멕시코나 캐나다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에서 NA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계신가요?

① 적용받아 수입하고 있다.
② 적용받지 않고 있다.
③ 잘 모르겠다.

6.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 귀사는 한국산 농식품 수입 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계십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① 원산지 증명이 어려웠다.
② 미국 세관에서의 통관이 어려웠다.
③ 기타( )

(7번. 위의 질문 2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에만 응답)

7.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수출품목이 이미 무관세이거나 특혜관세 인하 폭이 적어서
② 수출품목이 원산지 증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③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비용(증명서 발급비용/원산지 검증 대비 관리비 등)이 너무 커서
④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해 이를 잘 아는 전문인력의 부족
⑤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⑥ 기타(_____)

(8~9번.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 질문입니다)

8. 현지에서 한국산 농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은? (복수 응답 가능)

①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 절차
②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우려
③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사내 전문인력의 부족
④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의 부족
⑤ 한국의 공급업체(수출업체)의 협조 부족
⑥ 기타(_____)

9. 기업 입장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하여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복수 응답 가능)

①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한 금전적 지원
②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지원
③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사내 전문인력 지원
④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의 확산
⑤ 기타(_____)

◆ 다음은 우리나라 FTA 10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0. 한미 FTA가 전반적으로 귀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① 큰 도움이 됨(11번 문항으로) ② 다소 도움이 됨(11번 문항으로)
③ 별로 도움되지 않음(12번 문항으로) ④ 전혀 도움되지 않음(12번 문항으로)

(11번.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11.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FTA가 수입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연결
② 마케팅이나 수입하는 데 도움
③ FTA 체결로 시장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 간접 효과 발생
④ 기타(_____)

(12번.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12.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FTA가 기존 업무에 복잡성만 초래
② 관세인하보다는 비관세장벽 등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때문
③ FTA에 의한 관세인하 폭이 작아서
④ 기타(_____)

◆ 다음은 FTA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미국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업체 관점에서 볼 때 향후 한국의 대미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한국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정책은?
*우선순위에 따라 3위 이내로 선택해 주세요.(1순위: 2순위: 3순위:)

① 현지 금융서비스 확대를 통한 저리사업자금 융자 지원
② 현지 유통/물류창고 건설 지원
③ 현지 FTA 전문인력 육성/양성 지원
④ FTA 관련 정보 제공 확대
⑤ 1:1식 맞춤형 FTA 컨설팅
⑥ 원산지 검증 등 대응 지원
⑦ 해외 거래처 제공을 위한 외국어 설명자료 지원
⑧ 부품·소재 등을 납품해 주고 있는 국내 협력업체의 원산지 소명서 및 확인서 관련 협조 체계 구축
⑨ 기타( )

* 위에서 제시된 예문에 나와있지 않은 별도로 제시하고 싶으신 정책이나 지원이 있는 경우 직접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14. 기타 현지 수입업체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739 연구자료-1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12.
발 행 2014. 12.
발행인 최 세 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e-mail: dongyt@chol.com

ISBN 978-89-6013-711-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